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PART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I 아동학대의 발견

- 1. 학대와 훈육의 경계 08
- 2. 학대의 영향과 긍정적 양육문화의 중요성 10
- 3.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12
- 4.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14

II 아동학대의 신고

-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17
- 2. 아동학대 신고방법 19
- 3.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 22
- 4.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보호와 지도 23

PART
2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I 영유아 권리존중의 Base-line

-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28
-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분석 29
-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 32
- 4. 권리존중 행동지도 34

II 보육교직원의 역할

- 1.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35
- 2.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38
- 3.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42
- 4.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44

PART
3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I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

- 1. 영유아 성 행동과 성인의 태도 54
- 2. 영유아 성 행동 관련 용어의 정립 56
- 3. 영유아 성 행동 수준별 특성 이해 57

II 영유아의 성 행동 수준별 지도

- 1. 일상적인 수준의 성 행동 지도 59
- 2.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61
- 3.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62
- 4. 영유아 성 행동 지도 시 고려할 점 64

PART
4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I 아동 성폭력 예방

-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정의 70
- 2. 아동 성폭력 특성 73
- 3.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예방교육 방향 74
- 4.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경계존중' 중심으로) 76
- 5.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 80

II 아동 실종 예방

- 1. 실종에 대한 이해 83
- 2.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 86
- 3. 실종·유괴 예방 수칙 90
- 4.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실종 예방 관련 정보 91





To someone, you are a lighthouse.
When he flounders in the darkness of life and death,
You rescue him quickly and warmly with care.
You create small waves to protect his rights,
And these waves reach humanity endlessly.
Your influence is immeasurably significant.
You exist in reality, not merely as an illusion

강정원

누군가에게 당신은 등대이다.
삶과 죽음의 어둠 속에서 그가 허우적거릴 때
신속하고 따듯하게 보살핌으로 구조한다.
당신이 그의 권리를 지키려고 일으킨 작은 물결은
인류 전체에 끝없이 파동을 일으킨다.
당신의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당신은 허상이 아닌 윤리적 실존이다.

PART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생존발달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I 아동학대의 발견

1. 학대와 훈육의 경계
2. 학대의 영향과 긍정적 양육문화의 중요성
3.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4.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II 아동학대의 신고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아동학대 신고방법
3.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
4.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보호와 지도

I 아동학대의 발견



1. 학대와 훈육의 경계

• 훈육(訓育)은 '가르칠 훈' '기를 육'이라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가르쳐 기른다는 뜻이다. 또한, 영어 단어 discipline을 훈육으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그리스어, 헤브류어 등에서의 어원이 다양하며 대개는 설명하여 알게 한다는 뜻을 가진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부모 모두 자녀를 훈육하여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였으나 훈육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타이름이나 설명부터 꾸짖음, 체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훈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이 두드러지기도 하였다.



• 많은 문화에서 아동에 대한 훈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하던 때가 있었으나 1979년 스웨덴이 가정에서의 자녀 체벌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는 많은 국가에서 부모가 자녀 훈육의 수단으로 체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민법 제915조가 삭제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활동	성장기 직, 간접적인 체벌 경험에 대해 수강자들과 의견을 공유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학 전에 가정에서 내가 체벌을 받았다 취학 전에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체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취학 전 영유아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내가 체벌을 받았다 취학 전 영유아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다른 사람이 체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가정에서 내가 체벌을 받았다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체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나 학원에서 내가 체벌을 받았다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나 학원에서 다른 사람이 체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 훈육을 하다보면 훈육자의 의도는 비록 아동의 인성을 바르게 키우려는 것이라 해도 훈육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동의 권리를 해치고 아동학대로 변질되기가 쉽다. 무엇이 훈육이고 무엇이 학대인가를 구분하는 일반화된 합의는 없으며,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다양하다. 훈육이 도를 지나쳐 학대로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예측불가능성**
성인의 훈육 행동에 일관성이 없으면 아동은 성인의 특정 행동이 언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럴수록 아동은 성인의 행동이 자신을 바른길로 이끌고자 하는 훈육이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괴롭힘, 즉 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둘째 분노 동반**
성인의 훈육 행동이 분노를 나타내는 고성, 일그러진 표정, 거친 몸짓과 함께 표현되면 아동은 이를 훈육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위축시키는 학대 행위로 인식하기 쉽다.
- 셋째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
성인이 협박, 체벌 등으로 아동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이로써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면 이는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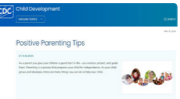

- 학대·훈육 간 판단이 애매한 사안에서 최근 판례는 행위자가 훈육 목적을 주장할 경우, 개인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도구를 이용한 폭력 행사 시 학대 인정한다. 이를 양형 이유로 참작할 뿐, 도구 사용 등 행위의 정도와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상해, 장애, 두려움·수치심 등 감정)을 고려해 학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 아동학대와 훈육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등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 외에도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을 경우 학대로 인정하는 경향이다.
-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법적 판단의 요건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하거나, 외상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겪은 심리적 불안감, 죄책감, 두려움, 거부감, 회피 감정과 위축된 행동 및 수면 장애 등으로 표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다만, 이동 중 차량에서 아동이 문을 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급하게 제지하는 행위, 아동의 비행행위 교정을 위한 1회성 행위, 장애 있는 형제 괴롭힘 및 보호자 폭행에 대응하는 행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의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 행사일 경우 불가소처분한 사례가 있다.

2. 학대의 영향과 긍정적 양육문화의 중요성

-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18세 미만)의 부정적 경험이란 단순한 학대(abuse)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즉, 여러 형태의 학대, 방임, 부모(부양자) 간의 폭력, 가정 내의 다양한 원인들(음주, 약물복용 등)로 인한 가정의 기능 마비, 또래 및 지역사회, 집단의 폭력을 강도 높고 빈번하게 경험하여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WHO, 2019)
- 1998년, 미국 샌디에이고의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에서 예방의학을 담당하던 빈센트 펠리티 박사는 비만 환자들의 과거를 살펴보다가, 이들이 어린 시절 힘든 경험을 많이 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환자들에게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ACE)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를 학회에서 발표했다.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로버트 안다 박사와 함께 연구를 확대했고,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졌다.
-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주로 백인 중산층이었던 17,337명의 참여자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학대, 방임, 가정 내 문제(부모의 약물남용, 정신 질환, 가정 폭력 등)를 경험했다. 네 명 중 한 명은 약물남용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고, 같은 비율로 신체적 학대를 당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성적 학대를 겪은 적이 있었다. 더 놀라운 점은 ACE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이었다. ACE 점수가 4점 이상인 사람들은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병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고, 우울증과 자살 시도, 약물 의존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ACE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살 시도 확률이 12배, 약물 의존 위험이 7.4배 증가했다.
- 이 연구는 공중보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의 트라우마가 성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ACE 연구가 진행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해 국제적으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 한국에서도 ACE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네 가지 이상의 부정적 아동기 경험을 가진 비율이 18.6%였고, 이들은 성인기에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6배, 자살을 생각할 확률이 4배 높았다. 또, 부모 세대에서 ACE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학대 가능성이 커지는 ‘학대의 대물림’ 현상도 확인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약 79%가 과거에 부정적 아동기 경험에 노출되었다(류정희, 2018).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19~59세) 4,008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학대와 폭력 경험의 강도를 13단계의 ACE 국제질문지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최저인 0점인 경우는 자녀 학대비율이 16.2%에 그쳤지만, 7점 이상에서는 67.1%로 4배 이상 높았다. 맞고 자란 부모가 자녀를 때린다는 ‘학대의 대물림’의 통념을 학술적으로 규명했다.
- 즉, 부정적 아동기 경험의 영향이 세대를 넘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서, 부모가 아동기에 학대와 같은 부정적 경험을 강하게 한 경우,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할 확률이 2배에서 10배 정도 높았다(이주연, 류정희, 2021).
- 결국,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기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어린이집에서의 좋은 보육과 부모 교육을 통해 완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1)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childabuseandneglect/fastfact.html>

- 이처럼 아동학대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학대의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질병통제및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학대를 받는 아동은 상처, 고통 등 즉각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 만성적으로 학대에 노출되면 향후 다른 폭력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약물남용, 성병 감염, 뇌 발달 지연, 교육성취 감소, 취업기회 제한 등 위험 요소를 추가로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 무엇보다 아동이 반복적으로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킨다. 즉, 아동은 학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두뇌에서 불안, 두려움, 공포와 관련된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을 과하게 가동시키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역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닌 상황에도 이 아동은 그것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두뇌의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체내 호르몬 및 신경화학적 시스템과 연동)을 가동시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응시스템은 점차 더 오랫동안 가동되게 된다. 결국 아동의 두뇌에서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며, 아동은 이후 발달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대응시스템의 활성화가 지속되면 아동의 학습, 기억, 자기 조절력이 손상된다. 아동기에 양육자와 맺는 관계의 질이 좋으면 이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양육자와 형성한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으면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력은 더욱 감소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14).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래 세계 각국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역할하기(positive parenting), 즉, ‘긍정양육’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긍정양육은 자녀의 연령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기대를 할 수 있으며, 자녀와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처벌하기보다는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훈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보기	QR 코드를 연결하여 국내외 긍정양육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세요	
	<p>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만든 ‘긍정양육 129원칙’을 알아보고 자료실에서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보세요</p> 	
<p>미국 질병통제및예방센터(CDC)에서 안내하는 긍정양육 정보입니다. 아동의 연령별로 부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육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측 마우스로 ‘한국어 번역’을 설정하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p> 		

3.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3조
제1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직장교육을 미 실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 (시행령 제26조)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요약 제시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내용: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해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신고의무자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 : 만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1호)
아동학대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 열거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상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가목 ~ 카목 - 아동복지법상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호 제4호 타목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파목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하목
아동학대관련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보다 넓은 개념으로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과 연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 제17조, 누구든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의 행위 금지

-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2호에서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보호자에 해당된다.
-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거나(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보지 않아(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의 복지를 훼손하는 경우 모두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나뉜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성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살펴보기	<p>QR 코드를 연결하여 학대유형별 구체적인 예와 아동이 나타내는 신체적, 행동적 징후를 알아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학대의 구체적인 행위 예,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정서학대의 구체적인 행위 예,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성학대의 구체적인 행위 예,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방임의 구체적인 행위 예,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장애인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학대	<p>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p>
장애인학대관련범죄	<p>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호 - 14호. 형법관련 1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관련 1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1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관련 1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19호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장애인학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노동력의 착취,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 관리나 금정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울 때,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십시오.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 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	내용	체크란	
1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혹적인 행위를 당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만한 질환, 신체적 흔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성인의 성적 행동을 모방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출처: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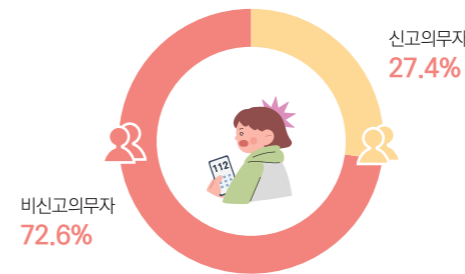
아동학대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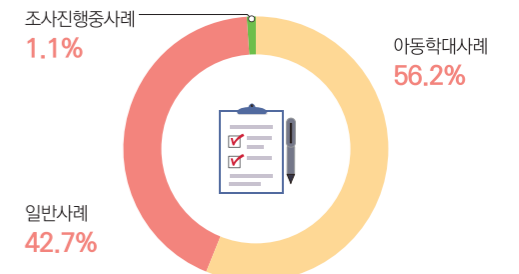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주요 통계」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8,522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총 45,771건이었다.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것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2,553건(27.4%)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신고는 160건(0.4%)였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33,218건(72.6%)였다.
- 아동학대의심사례 총 45,771건 중 아동학대로 사례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는 25,739건(56.2%)였다.

신고자 유형(보건복지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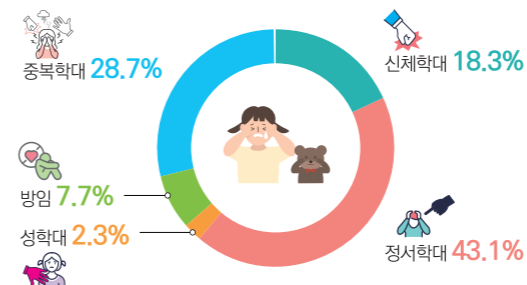


사례판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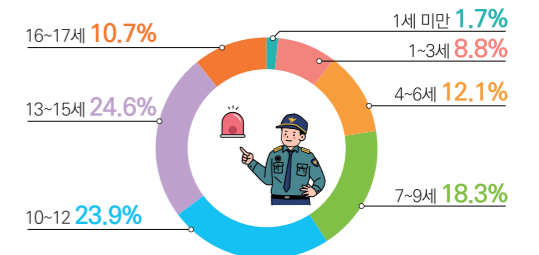


- 학대유형을 보면, 중복학대가 7,383건(28.7%), 정서학대가 11,094건(43.1%), 신체학대가 4,698건(18.3%), 방임이 1,979건(7.7%), 성학대가 585건(2.3%)였다. 피해 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3세 영아 및 걸음마기 유아가 10.5%, 4-6세 취학전 유아가 12.1%에 달한다.

학대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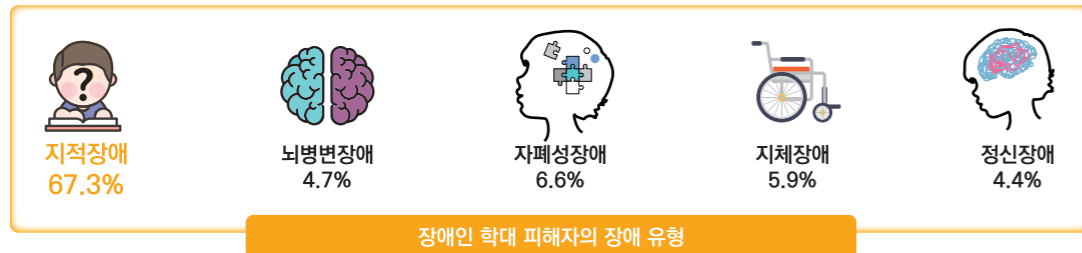


피해 아동의 연령



PART 1

- 2023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25,739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15.7%로 나타났다. 0세는 18명(0.6%), 1~3세는 179명(5.7%), 4~6세는 350명(11.2%)이었다. 재학대 사례 행위자 중 부모가 3,943명(97.4%)이었고, 보육교직원이 8명(0.2%)이었다.
-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5,497건이며 그중 학대의심사례는 2,969건(54.0%), 일반사례는 2,528건(46.0%)이다.
- 학대의심사례 2,969건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47.8%)이다. 중복학대를 미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 30.8%(572건),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성적 학대 14.1%(261건), 방임 6.4%(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 아동 학대 가해자 중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 의한 사례는 5.2%(20건)이었다.





- 2023년 현재, 전국 총 92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국 총 144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가 설치되어 있다.

2. 아동학대 신고방법

활동	다음 사례를 읽어본 후 112 전화신고 예시문을 작성해 보세요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남아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가끔 아동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음. 아동이 학교에 다닐 나이처럼 신체적으로 발육되어 있었으나 아동에게 물어보니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며, 언어구사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져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에는 어려움. 간혹 2세 경으로 보이는 여동생 손을 잡고 다니는데 여동생의 옷차림이나 발육상황이 지체되어 보임.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하여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도 있다. 아동학대 상담 중 학대 의심 사실이 확인되어 출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112에 통보되며 현장출동이 실시된다.

<p>어디로 신고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번 없이 112에 신고(전화, 문자) • 시군구 긴급전화 • 아이지킴이콜 활용 • 장애인학대는 1644-8295(장애인학대 신고번호)
<p>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의심)아동의 현재 상황: 피해(의심)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피해(의심) 아동의 심신상태 등 2. 피해(의심)아동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아동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피해(의심) 아동과의 관계, 피해(의심)아동과의 동거여부, 아동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4. 신고자 관련사항: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피해(의심)아동과의 관계, 신고의무자 여부,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5. 아동학대 의심상황: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6. 기타사항: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아동학대 행위(의심)자의 현재 상황(심신 상태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여부, 기타 내용 <p>※ 위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p>
<p>신고 예시</p>	<p>112 전화신고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 OO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연락드립니다. ※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 - 아동의 현재 상황은 ()입니다.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상황 등

 신고 예시	<p>- 아동의 인적사항은 ()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p> <p>- 학대행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등.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p> <p>- 신고자는 ()입니다.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등 ※ 익명으로 신고 가능</p>
 신고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p>신고자의 신분은 다음과 같이 보호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누구든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됨) - 신분관리카드의 열람 가능 - 증인신문시 영상물 촬영 제출 가능 - 신변 안전 요청 가능 -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출처: 보건복지부·경찰청(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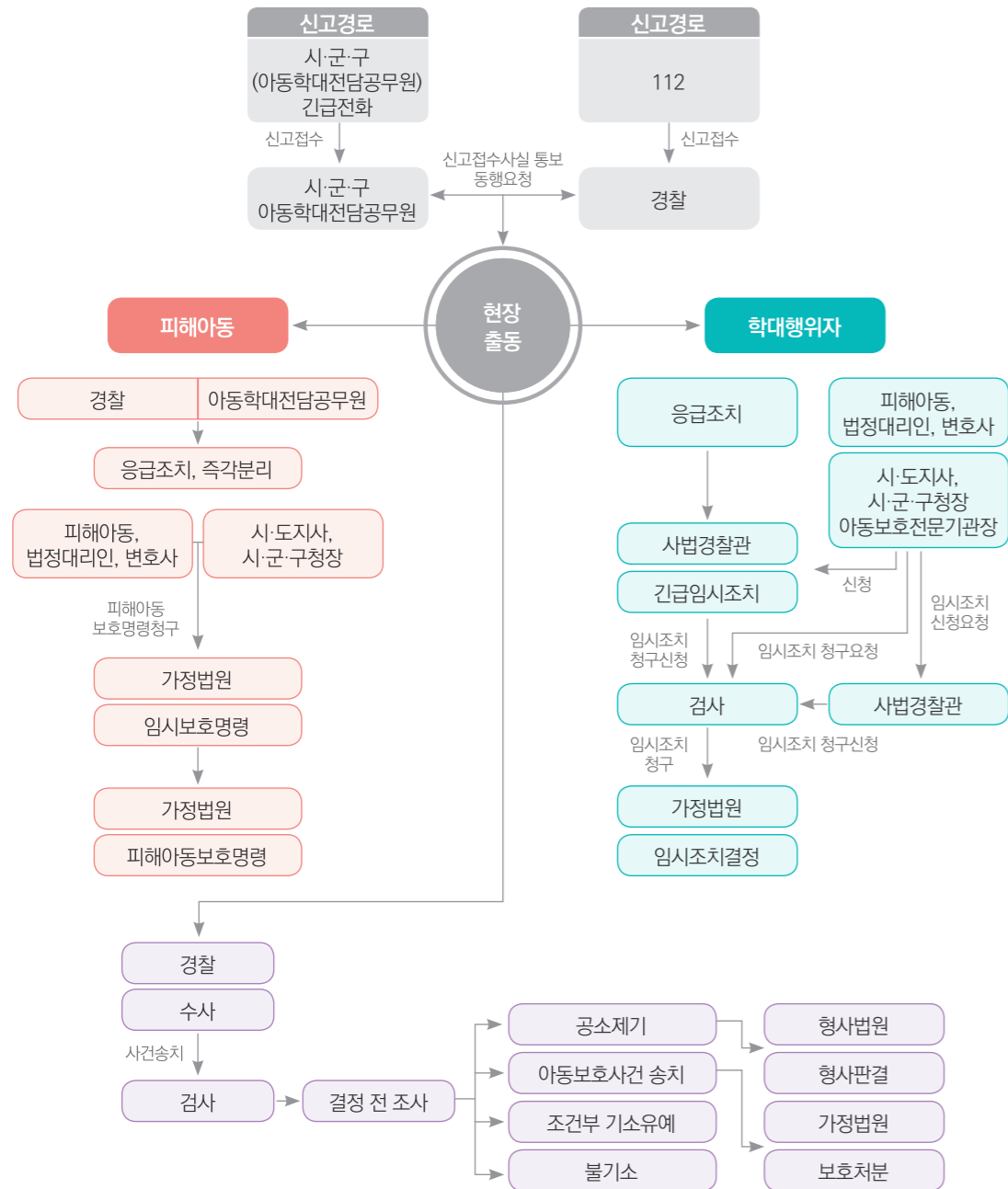
• 아동학대 신고 전·후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를 확인한다.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처나 징후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질문하여 설명을 들어본다.
- ✓ 아동학대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한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
- ✓ 피해아동의 안전 및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응급상황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
 - 피해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한다.
 - 피해아동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아동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
- ✓ 신고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본인도 주의한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2항)
 - 따라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방문 시 주변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어도 답변하지 않고, “아동학대가 신고되어 방문했다”고 말한다.
 -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독단적으로 응해서는 안 되며,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대응 창구를 원장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 ✓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수사에 협조한다.
 -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전문가가 상담하도록 한다.
 -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

• 아동학대 신고 발생 후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고)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인용도서의 85 - 88쪽에 제시된 부록 2. 용어설명을 참조할 것.

출처: 보건복지부(2023).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4.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보호와 지도

•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영유아의 출결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한다.

어린이집에 결석한 아이, 반드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p>매일 확인해야 하는 내용</p> <p>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하는 경우, 부모가 교사에게 유선이나 스마트 알림장 등 대화 방법을 통해 어린이집에 알려야 한다. 교사는 아동 결석 당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결석 사유를 확인한다.</p>	<p>2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p> <p>2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가정방문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방문 시 보육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방문한다.</p> <p>※ 가정 방문해야 하는 경우, 각 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한다.</p>
<p>☑ 명확한 사유 없이 퇴소 신청을 할 때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p>	

•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징후는 학대나 방임의 특성, 발생 시기, 지속기간, 강도, 영유아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 어떤 영유아는 분명하고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영유아는 미세한 행동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특성들은 학대나 방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학대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징후들은 아동과 가족이 지원이나 중재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

- **발달지연:** 영유아기에 일관되고 풍부한 경험이 부족하면 동작, 언어, 사회, 인지 발달의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 **섭식행동문제:** 심각한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음식을 감추거나 모으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 **진정행동:** 어떤 영유아는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굶거나, 상처를 내는 등의 평범하지 않은 진정행동을 보인다.
- **정서 문제:**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문제의 범위는 매우 넓고, 대개는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다. 이 외 어떤 영유아는 성인에게 매우 빨리 애착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안전에 대한 영유아의 기본 욕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부적절한 모델링 행동:** 학대하는 성인을 모방한 행동, 성인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 행동을 나타낸다. 영유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 **공격성:**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는 또래에게 공격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학대나 방임의 결과 영유아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충동 조절이 어려우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낼 수 있는 행동 징후를 이해하고, 학대신고 전후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가족을 지원하는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은 가정에서 학대위험에 노출되는 영유아에게 일종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일과 경험을 통해 영유아가 세상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PART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회복탄력성이 있으며, 특히 일부 영유아는 학대와 방임의 정도와 무관하게 학대경험과 관련된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해낼 역량을 갖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같이 지원적 성인의 도움으로 학대에 노출되었거나 노출 위험이 있거나, 학대가 있지는 않아도 가정폭력 등과 같은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영유아가 스스로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영유아를 잘 돌봐주기:** 영유아를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 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안아주고, 달래줄 필요가 있다. 학대경험이 있는 영유아 대부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은 아픔, 고통, 다른 형태의 학대와 관련이 있었다. 영유아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지는 것이 늘 불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정서 연령에 따라 영유아를 돌봐주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연되어 있기 쉽다. 이들 영유아는 공포를 느끼거나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다. 보육교직원은 이들 영유아를 그들의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정서적 연령과 요구에 맞게 이해하고 돌봐줄 필요가 있다.
- **영유아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대화하기:** 보육교직원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에게 부드럽고 일관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영유아는 교사를 신뢰하고 자기의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 **영유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한 영유아가 또래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깨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방임에 노출된 영유아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따로 숨겨놓을 경우 이 행동이 음식이 박탈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런 행동을 못하게 막을 경우 이는 영유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교사 자신을 돌보기:**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가외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보육교직원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다면 이들 영유아의 요구에 일관적이고, 예측성 있으며, 풍부하고, 지원적인 돌봄을 해주기 어렵다. 보육교직원도 쉬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PART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관되게 긍정적 지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와 보육교직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I 영유아 권리존중의 Base-line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분석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
4. 권리존중 행동지도

II 보육교직원의 역할

1.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2.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3.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4.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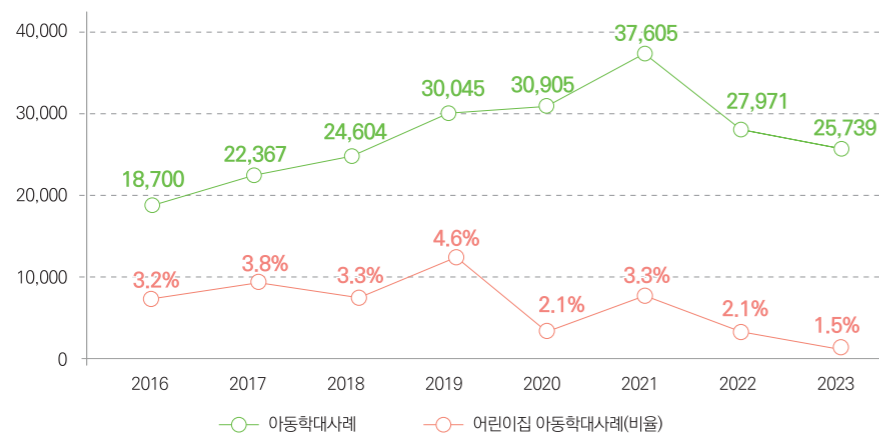
I 영유아 권리존중의 Base-line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 사례 총 25,739건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382건(1.5%)인 것으로 나타나 감소하는 경향이다.

발생년도	아동학대사례 건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사례 건수	비율
2016	18,700	601	(3.2%)
2017	22,367	843	(3.8%)
2018	24,604	811	(3.3%)
2019	30,045	1,371	(4.6%)
2020	30,905	658	(2.1%)
2021	37,605	1,233	(3.3%)
2022	27,971	600	(2.1%)
2023	25,739	382	(1.5%)



- 어린이집에서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는 별도 통계를 찾기 어려우나, 뉴스검색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 2021년 2월 15일 제주시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배기 아동이 양 귀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했다. 다음날인 16일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노컷뉴스 2022.02.24)
- ○○○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인해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시 관계자는 “장애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이같은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여수넷뉴스 2022.02.23)
- ○○시 국공립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장애아동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천투데이 2022.02.18)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분석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사법적 판단의 요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 상태
 -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 아동권리보장원(2023)은「2020-2022 아동학대사건판례집」과 최근 사건들을 통해 다음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서학대의 증가와 합헌성
 - 헌법재판소는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20년에도 여전히 정서학대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537 전원재판부 결정). 정서학대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즉 신체학대와 성적 학대에 이르지 않은 행위를 정서학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
 -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담임교사가 제지하지 않은 행위를 방조로 보기도 한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3127 판결).
 - 증거수집의 중요성
 - 비슷한 행위라도 일회성, 지속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 피해아동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한편, 질문자에 의한 피압시성,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진술과정에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을 하여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결국 피해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활동	보건복지부(2023)가 최근 발간한 「2020-2022아동학대 사건 판례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결 사례에 대해 옆 사람과 논의해보세요
<p>사례1 교사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가락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바른 행위 (대전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20고단4271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관계] 피해아동 C(6세)와 D(6세)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C의 팔을 잡고 억지로 자신의 책상으로 데리고 간 후 울면서 저항하는 C의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였고, C와 D의 양손 엄지 및 검지손가락 손톱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칠하였다. ▪ [양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 	
<p>사례2 어린이집 원장이 2세 아동을 아기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은 행위(서울서부지방법원 2020.3.25. 선고 2019 고단4059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이자 OO반(1세~3세 미만)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OO반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C는 OO반 보조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아동 G(2세)는 다른 또래 아동들보다 대근육 운동의 발달이 빠르고 매우 활발하여 종종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래 아동들과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OO 반 지도 및 통솔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들은 업무 편의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일명: 부스터)에 앉혀놓기로 공모하였다. 2019. 3. 25.경부터 2019. 5.13.경까지 총 26회(최소 2분에서 최대 49분)에 걸쳐, 피해아동이 이미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식탁에 강제로 앉힌 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 [양형]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p>사례3 보육교사가 손가락으로 아동이 마스크를 착용한 부위를 찌르는 행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6.9. 선고 2021고단1370 판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 A는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F(만 5세)가 글쓰기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입 부위를 1회 찌른 것,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장난감을 치우도록 하고 피해아동이 다가오자 배 부위를 1회 찌른 것, 피해아동을 혼욕하면서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아동의 코 부위를 1회 찌른 것, 교실 내 개수대 앞에 서 있는 피해아동의 정수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약 2개월간 16회에 걸쳐 3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하지 않았다. ▪ [양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논의사항

- ① 학대의 유형은 무엇인가?
- ② 학대 행위의 동기는 무엇인가?
- ③ 학대 행위자의 태도는 어떠했나?
- ④ 아동에게 미친 유형력은 어느 정도인가?
- ⑤ 이 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

[살펴보기]

QR 코드를 연결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판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세요



• 이외에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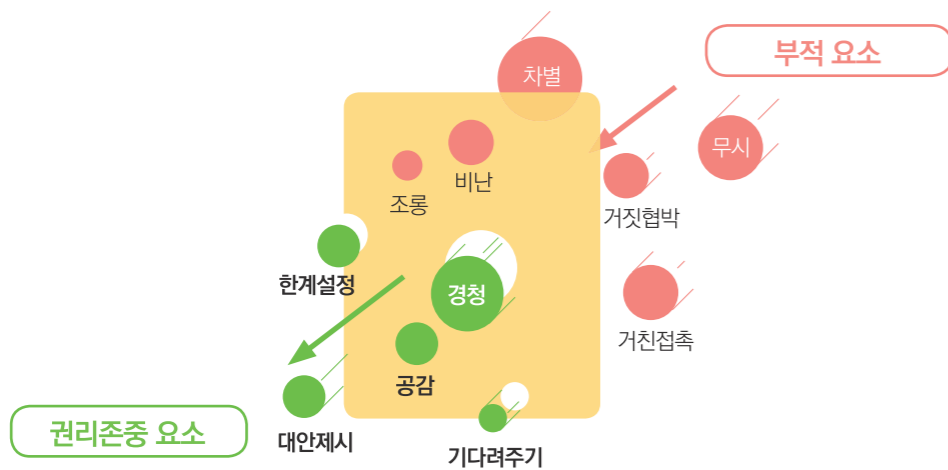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전제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판례를 분석해보면, 무시, 비난, 조롱, 거짓 협박, 차별, 거친 접촉 등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기초 선을 흐르는 부적 요소들이 반복되면서 아동학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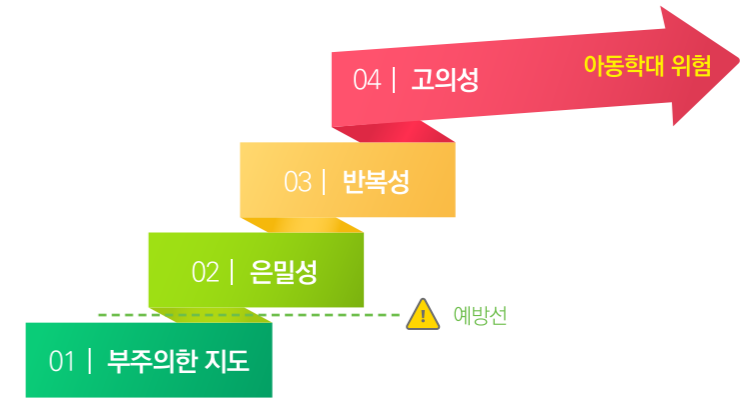
부적 요소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문 中 일부
무시나 방치가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안아달라고 하는 피해 아동의 ...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7고단 6311판결)
비난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쉬를 싸냐"며 폭언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1861)
조롱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훈육하겠다며 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 세운 후 갑자기... 다른 원생 앞에서 아동의 알몸을 노출시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8.18. 선고 2018고단 736 판결)
거짓 협박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과제를 마무리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103)
차별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교실 구석에 있는 언어영역 책상에서 혼자 먹도록 배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8노484 판결)
거친 접촉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피해아동에게 "미워"라고 소리치며 양 볼을 꼬집어 빨갛게 달아오르게 한 후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피해 아동의 머리끝까지 덮어놓아 피해 아동이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5고단1107판결)

출처: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요소 대신 부적 요소가 나타난 상태를 부주의한 지도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이 심지어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다.



-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부주의한 지도 행위가 영유아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에 대해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자기경계가 흐려져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은밀성, 반복성, 고의성을 띄면 아동학대 행위로 심화될 위험이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부주의한 지도의 요소가 나타날 때 이를 아동학대 사고의 니어미스라 인식하고, 즉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이나 업무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권리존중 보육이 일상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니어미스(Near Miss)**란 하마터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종사자가 니어미스를 경험했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종사자의 행동이나 업무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어린이집에서 불의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영유아의 안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보육활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은 니어미스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관리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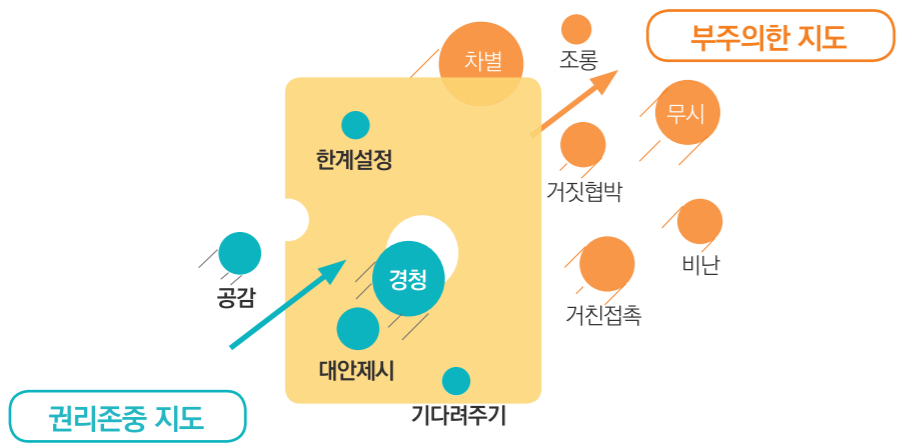
원래는 사격이나 포격 등에서 포격에 가까운 화탄을 뜻하는 군사용어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에 접근하여 공중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근접사고'를 말한다.
의료안전관리에서는 '발생으로 인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전에 발견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사건'을 뜻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보육일과를 모니터링 하여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가 행위자 스스로 혹은 주변의 관찰에 의해 탐지되고 중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교사 연수, 보호자와의 협력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주의한 지도가 아동학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적극 예방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그것이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거나 혹은 부주의한 지도였다고 호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권리존중 행동지도

- 영유아에 대한 부주의한 지도 행위를 중재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리는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행동의 부적 요소를 들어내고 대신 그곳에 권리존중의 바람직한 행동 요소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의 요소	보육교직원의 행동에 권리존중 요소가 빠질 때 대신 나타나기 쉬운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다려주기 ✓ 영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구를 경청하기 ✓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에 공감해주기 ✓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한계 설정해주기 ✓ 영유아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시 (영아가 계속 칭얼거리며 옷을 잡아당기는데 못 본 척함) ✓ 비난 (실수로 식판을 쏟았는데, "야휴!"하며 혀를 차서 유아가 눈치를 봄) ✓ 조롱 ("잘~한다. 너 자구 그러다가 넘어 질 줄 알았다.") ✓ 거짓협박 ("교실로 들어가자! 골피지? 너는 혼자 놀아! 우리는 간대!") ✓ 차별 ("너는 오늘 계속 띠 짓을 했으니, 선생님이 00이만해 줄 거예요.") ✓ 거친 접촉 (팔을 부주의하게 잡아당김)

II

보육교직원의 역할



1.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 하루일과를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의 기초선(Base-line)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주의한 지도의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권리존중의 요소로 바꾸어 상호작용해야 한다. 몇 가지 상황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세) 등원하면서 가져 온 팔찌를 보여주고 싶어 교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			
<p>부주의한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선생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간식 챙기느라 정리하느라 바쁘잖아!" • "(영아의 팔찌를 뺏어 사물함에 넣고 닫으며) 알았어. 빨리 들어가 앉아. 집에서 물건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p>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시] 영아의 요구에 대한 경청과 공감 결여 • [거친 접촉] 영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빼앗음 • [비난] 영아의 관심과 행동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반응하여 죄책감 갖게 함
<p>바람직한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어서와! □□이가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구나? 팔찌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니?" • [한계설정]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 지금은 친구들을 맞이해야 하고 간식도 나눠주고 있어. 가방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데 기다려줄래?" • [대안제시] "잠깐만~ 친구들 맞이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간식 먹고 조금 후에 같이 보자 기다려줘서 고마워." 		

- 즉, 교사는 부주의한 지도 대신 경청, 공감, 대안 및 한계 제시하기 등의 긍정적인 영유아 권리존중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복되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행동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p>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5가지 비법으로 아이를 대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 청하기 공 감하기 한 계설정 대 안제시 기 다리기 	<p>영유아가 간혹 반복되는 문제행동을 나타낼 때는 아이를 긍정적으로 지도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의 패턴과 원인을 살펴보기 •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하기 • 대안 행동을 안내하고 격려해 주기
--	---	---

활동	<p>QR코드를 연결하여 리플렛과 자료집을 다운받아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업무에 활용해 보세요.</p> <p>2023.12.15.에 등록된 자료입니다.</p>
----	---

영유아도 교사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매일 매일을 **권리존중 상호작용**으로 채워주세요!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경.공.한.대.기

경

청하기 영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구 경청하기

"친구 자동차가 재미있어 보여서 그랬구나"

공

감하기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에 공감해주기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속상했구나"

한

계설정 할 수 없거나 애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한계설정하기

"지금은 낮잠 시간이라 조용하지? 조용해야 친구들이 잠을 잘 수 있단다."

대

안제시 영유아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제시하기

"바닥에 있는 놀잇감 중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것만 정리해 볼까?"

기

다리기 영유아의 정서 조절, 한계 수용, 제안 선택을 기다려주기

"친구랑 순서대로 소리를 내니까 멋진 음악이 되었네!"



경공한대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자료집 바로가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 교사의 권리존중 지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나 좌절로 인한 아동학대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는 '멈추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멈추기는 영유아의 곁에서 머물면서 영유아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 **감정 조절하기**

- 복식호흡을 10회 하기
- 잠시 창문 밖을 보며 물을 마시기
-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기

▶ **생각하기:** 원인과 책임에 대한 즉각적 판단을 유보하고 현재 가능한 해결 지향

▶ **도움 구하기**

- 급박한 상황 시 원장과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요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성인은 교사이며, 교사의 정신건강은 영유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교사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우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무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 등은 영유아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교사는 평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속적인 감정부조화로 정신적 소외감, 감정마비, 소진을 경험할 때
- 과도한 업무로 시간 부족을 느낄 때
- 직무상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전문성 부족을 느낄 때
- 업무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조정이 불가하다고 느낄 때
- 업무 여건과 환경이 불안정할 때
- 동료와 갈등관계에 있을 때
- 영유아의 보호자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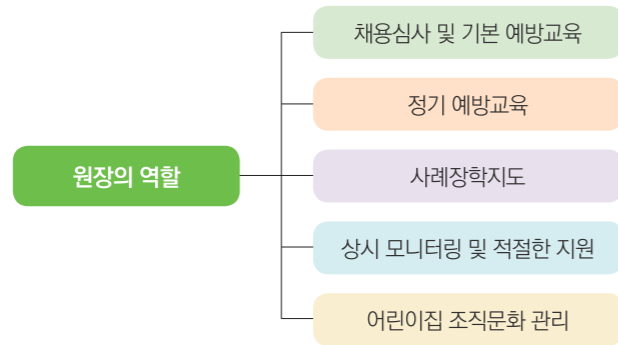
•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 점검을 하고 필요 시 도움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보육진흥원 마음 성장 프로젝트, 정신적 웰빙상태 검사, 우울감 진단 검사²⁾ 등을 해보고 수치를 확인 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
- 교사 회의나 면담 등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업무 재조정 요청하기
- 취미 생활, 가벼운 산책, 운동, 명상 등 개인적인 충전시간 가지기

2) 해당 검사 문항은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부록 참조.

2.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 어린이집 원장은 **니어미스(Near Miss)** 수준에서의 적극적 중재·관리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채용심사 및 기본 예방교육: 채용 시 면접 및 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현장적응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초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채용 심사시 '영유아 이해 및 현장 적응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활용해 보세요.

-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
-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신체적 상흔, 무단 결석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하겠나요?
- 부모가 부주의한 지도에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 : 어린이집 평가제 매뉴얼(2021)에서 일부 내용 참고



- 정기 예방교육: 원장은 '아동학대 관련 법적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보육교직원들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학대(의심)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 교육보다는 보육교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보육활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적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의 예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법적 의무교육, 각 연 1회) •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학대사례 및 발생 원인 •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열람 요청 사유 및 절차 • 어린이집 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의 중요성과 실제 • 아동권리존중(혹은 부주의한 지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 점검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장학 • 온라인 교육 • 전문가 초빙 • 외부 교육 참여(지역연합회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교육 등)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				
보육 중에 아래의 부주의한 지도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음	종종 있음	자주 있음
무시	1.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들은 척 함 (예: 영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무시)	0	1	2
	2.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함 (예: 영유아가 산책하다가 넘어져 있는데 교사를 부를 때까지 돕지 않음)	0	1	2
	3.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 전체에 맞추라고 함 (예: 낮잠 시간에 먼저 일어난 유아에게 일어나지 말고 다시 누우라고 함)	0	1	2
비난	4. 실수 행동의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려 수치심을 갖게 함 (예: "두 눈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아서 넘어졌지!")	0	1	2
	5. 문제의 원인을 영유아에게 전가하여 죄책감을 갖게 함 (예: "네가 뭘 잘못 했으니까 안 놀아주지! 친구들이 괜히 그러겠냐?")	0	1	2
	6. 발달에 부적합한 기대를 하여 영유아의 실수를 추궁함 (예: "이거 누가 흘렸어?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은 친구 누구야?")	0	1	2
조롱	7. 교사들끼리 영유아의 미성숙을 비웃음 (예: "우리 반 큰 아기, 오늘 또 운대! 선생님 재 왜 또 울어요?")	0	1	2
	8. 다른 영유아들과 성취와 능력을 비교하며 비하함 (예: "친구들은 혼자 잘 하는데 너는 왜 선생님 올 때까지 안하고 기다리니?")	0	1	2
	9. 대집단 활동 시 영유아의 행동과 처벌에 대해 토론을 함 (예: "약속 어긴 친구들은 우리 반 아니었으면 좋겠지요?")	0	1	2

거짓 협박	10. 기대행동을 안하거나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함 (예: “놀잇감 가지고 한번만 더 싸우면 다른 반에 가져다 줄 거야.”)	0	1	2
	11. 서둘러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걸어 강요함 (예: “열까지 셀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 못 먹는다.”)	0	1	2
	12. 영유아 행동 통제를 위해 공포스러운 귀걸이를 예고함 (예: “낮잠 자야 엄마 오시지? 안자면 엄마 오지 말라고 할 거야.”)	0	1	2
차별	13. 영유아 개인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비호감을 표시함 (예: “선생님! 애 좀 달래 봐요! 애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0	1	2
	14.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며 놀림 (예: “아기처럼 언제까지 기저귀 찰래? 기저귀 찬 친구는 별로야.”)	0	1	2
	15. 발달이 늦은 영유아의 활동 참여 기회를 막음 (예: 현장학습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함)	0	1	2
거친 접촉	16. 영유아가 규범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다소 거칠게 물리력을 행사함 (예: 순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에게 뒤로 가라고 손을 대는데 아이가 밀쳐짐)	0	1	2
	17. 영유아가 사용 중인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편감을 느끼게 함 (예: 낮잠시간에 영유아가 누워 있는 매트를 발로 밀며 이동시킴)	0	1	2
	18.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함 (예: 뛰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뛰어다녀서 손으로 확 잡음)	0	1	2

• 사례장학지도: 원장은 사례 장학지도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개별성을 이해하고, 일과 상황별로 적절한 지도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사례 장학은 교사교육이나 회의 시간 등을 활용하며,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전체 교사, 영아반/유아반 교사, 연령별 교사 등으로 집단을 다양하게 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개별성(영유아 특성 및 기질)에 따른 지도전략 논의_ B어린이집 사례

- **논의점:** 교구장에 올라간 00이를 보고 동료교사인 A교사가 “00이~ 여기 올라가고 싶었어!”라며 안아서 내려주었는데 저는 안전과 관련된 행동에서는 영아에게 “높은 교구장에 올라가면 안 돼! 위험해!”라고 제한 행동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예방과 아동존중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

- **우리 어린이집 지도전략**
 - 각반 경력교사가 위험 행동 여부를 판단 ▶ 담임 간 동일한 기준 정하기
 - 안전과 직결된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 “00하면 안 돼!”, “00아 때리면 안 돼!” 등의 제한 행동 먼저 지도할 수 있음, 이후 이유 설명, 공감, 대안 등을 지도함
 - 위험한 행동은 연령별, 원아별로 다르게 최소한으로 규정 ▶ 위험한 행동이라 판단해 행동 제한을 많이 할수록 모형 놀이와 탐색 활동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교사의 관리 능력을 올리고 제한 행동은 최소화하기

• 상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지원: 원장은 어린이집의 일과 내에서 정기적, 비정기적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권리존중 상호작용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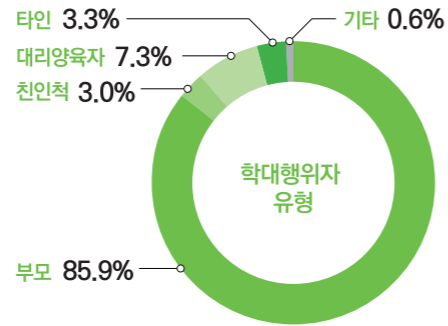
대상	점검 내용	적절한 지원 예시	참고자료
보육교직원 (교사)	권리존중 상호작용	격려와 지원, 모델링 일과운영 시간 조정 개별 면담 통한 지원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
보육환경 및 근무환경	시설설비, 놀잇감 위생, 안전	위험요인 제거 및 청소 필요시 시설 개보수 놀이환경 개선 지원	환경 점검표
	근무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근무시간표 및 일정조정 대체인력 지원	
영유아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여부	보조교사 추가 지원 가정과 긴밀한 소통	보육일지 관찰일지

• 어린이집 조직문화 관리: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규정을 대체하여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판단하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준다.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기관의 비전과 가치가 반영된 운영방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육교직원과 공유함으로써 업무수행 절차가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사의 시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및 업무처리 과정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육교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지원함
- 존중, 배려, 경청 등 정서적 소통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동기와 조직 내 협업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영유아의 인권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과 사례 장학지도, 보육일지 검토 등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필요한 경우 초보 교사와 경력 교사 간 멘토링 관계를 통해 업무수행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원장은 처우나 복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권리존중 상호작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 수 있음
- 원장은 근무 환경 개선 및 조직문화 관리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 사례 총 25,739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20,659건(80.3%)였으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총 22,106건(85.9%)였다.



• 가정에서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초선(Base-line)을 지키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의 부주의한 지도 사례

무시

“뜨그만게 뭘 안다 그래.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마.”
 “(아이가 요구하는 일을 거절하며) 그건 네가 결정할 일 아니야. 엄마, 아빠가 허락해줄 때 해.”

거짓협박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울음 안 멈추면 벽보고 서있게 할거야!”
 “(밥 안먹는 아이에게) 밥하고 반찬 골고루 다 먹어야 TV보여 줄거야!”

비난, 조롱

“너 왜 자꾸 밤에 오줌 싸는거야. 00이가 자꾸 오줌싸니까 엄마 힘들잖아.”
 “엄마, 아빠 빨리 회사가야 해. 너 때문에 회사도, 어린이집도 늦었잖아. 양말 신으라니까, 왜 안 신고 돌아다니는거야!”
 “신발 제대로 신으랬지! 너 거꾸로 신고 다니다 넘어질 줄 알았어.”

차별

“동생도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데, 00이는 왜 혼자 정리 못하는 거야.”
 “너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장난감 양보하는 거야.”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공식블로그

• 더 나아가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방법을 배워 실행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아동권리보장원 인스타그램

• 영유아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권리존중을 경험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지도방법이 다르면 영유아는 성인의 지도에 어떻게 따라야 할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 영유아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관되게 긍정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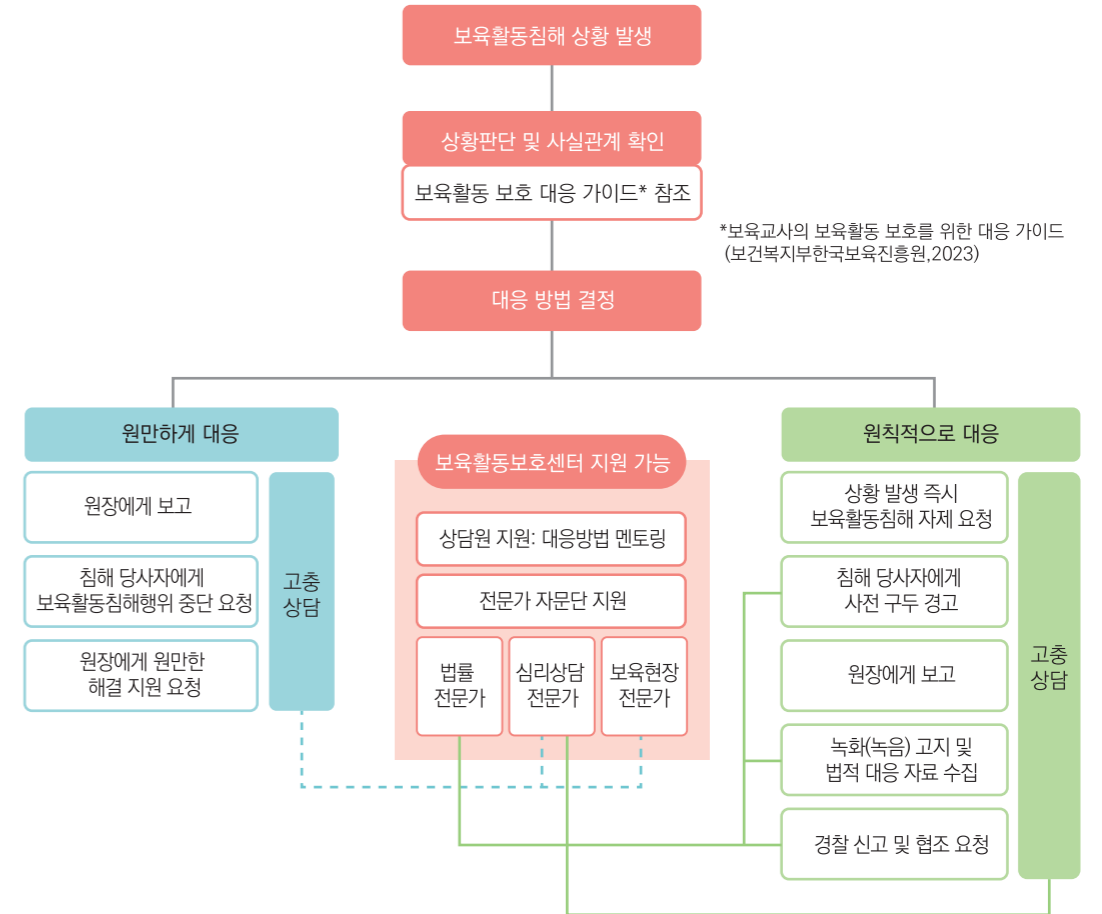
4.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해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동료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혹여 사안이 전혀 학대와 무관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이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유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된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파면, 해임,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적 처벌 과정에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신변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한다. 보육활동이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어린이집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대·소집단 활동, 개별 활동, 놀이,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 보육활동* 침해행위란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보육활동을 제한받는 모든 행위로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에도 보육활동과 관련하여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향한 온·오프라인상의 모욕,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보육교직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보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 아동학대 관련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거 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생활지도)
 - 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0조의12(영유아생활지도) - 요약제시
 - ① 어린이집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학업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등

- 보육활동 침해 행위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로, 영유아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도 포함된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다.
-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절차



• 보육활동 침해 기본 대응 4단계(노떠증상)

원칙	절차	피해 보육교직원 대응요령
보육활동 침해 기본 대응	거부의사 전달하기 (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즉시 거부의사 전달 • 거부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알고 표현하지 못했다라도 자책하지 않기
	보육활동 침해 현장 떠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다면 보육활동 침해 현장 즉시 떠나기
	증거자료 수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가 될 만한 정황자료 수집하여 보관 (목격자, CCTV, 일지, 문자, 메일, 치료 증빙 등)
	전문기관과 상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활동보호센터와 사건처리 방법 상의하기

• 보육활동 침해에 원만하게 대응절차는 아래와 같다.

원칙	절차	피해 보육교직원 대응요령
원만하게 대응	상황판단 및 사실관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시, 보육활동 침해유형 선별
	원장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에게 면담 요청 후, 대면하여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 해당 보육활동 침해 건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전달 • 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상황이 보육활동 침해행위 요건에 부합여부 확인
	가해행위 중단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활동 침해 당사자에게 면담 요청 후,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상기 • 보호자에게 그 행위가 보육활동 침해행위중 OO에 해당함을 설명 •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
	원만한 해결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보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안 요청 (예. 특별휴가, 보호자 분리조치 등)

• 보육활동 침해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원칙	절차	피해 보육교직원 대응요령
원칙적으로 대응	즉시 자제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활동 침해 상황 발생 즉시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에게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됨을 고지 • 즉시 해당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
	사전 구두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보호자의 행동이 영유아보육법의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됨을 고지 • 보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될 경우, 필요 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관련기관에 신고 및 법적 대응할 것을 알림
	원장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에게 면담 요청 후,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 법령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상황이 보육활동 침해행위 요건에 부합여부 확인 • 해당 보육활동 침해 건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
	녹화(녹음) 고지 및 법적 대응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보호자에게 고지 후 녹화(녹음) 실시 • 스마트폰, 녹음기, CCTV 등의 기기를 이용해 보육활동 침해행위를 입증 자료 수집 (예. 녹음 파일, 문자 내용, 목격자 진술서, 보육활동 침해행위 기록서 등)
	관련기관 및 경찰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여부 심의 및 조정 요청 • 112(긴급신고) 혹은 110(비긴급 신고)으로 신고전화 • 경찰에게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상황 구체적으로 전달 • 법적 조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 신고 이후의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 요청

•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원장은 다음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 사례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가능한 속히 보호자를 직접 만나 보호자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 보호자의 요구 등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된 보육교직원을 면담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한다.
- 해당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부주의한 지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함께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어린이집에서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노력할 내용이 무엇인지 안내하여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보육행동을 수정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 기록하고 논의하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이 적합하게 바뀌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지침,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 모니터링 방식을 검토, 보완함으로써 어린이집 전체에서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보육교직원들이 긍정적이고 발달에 적합한 보육행동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다른 보육교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원장은 다음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내에서 다른 보육교직원에게 의해 영유아에 대한 부주의한 지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간과하지 말고 즉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보육교직원을 면담하여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부에서 보육교직원 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고나 논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보여 지지 않는 한, 전체 보육교직원과 논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부주의한 지도를 하였다든 문제가 제기된 해당 보육교직원을 면담하여 상황에 대해 묻고 그 보육교직원의 설명과 자기변호를 청취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면담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보육교직원에게 이를 지적하고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도록 명확히 요구한다.
-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내에서 동료 보육교직원에게 의해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원장은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사안이 종결된 이후에는 향후 비슷한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요소를 찾아 보육교직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 및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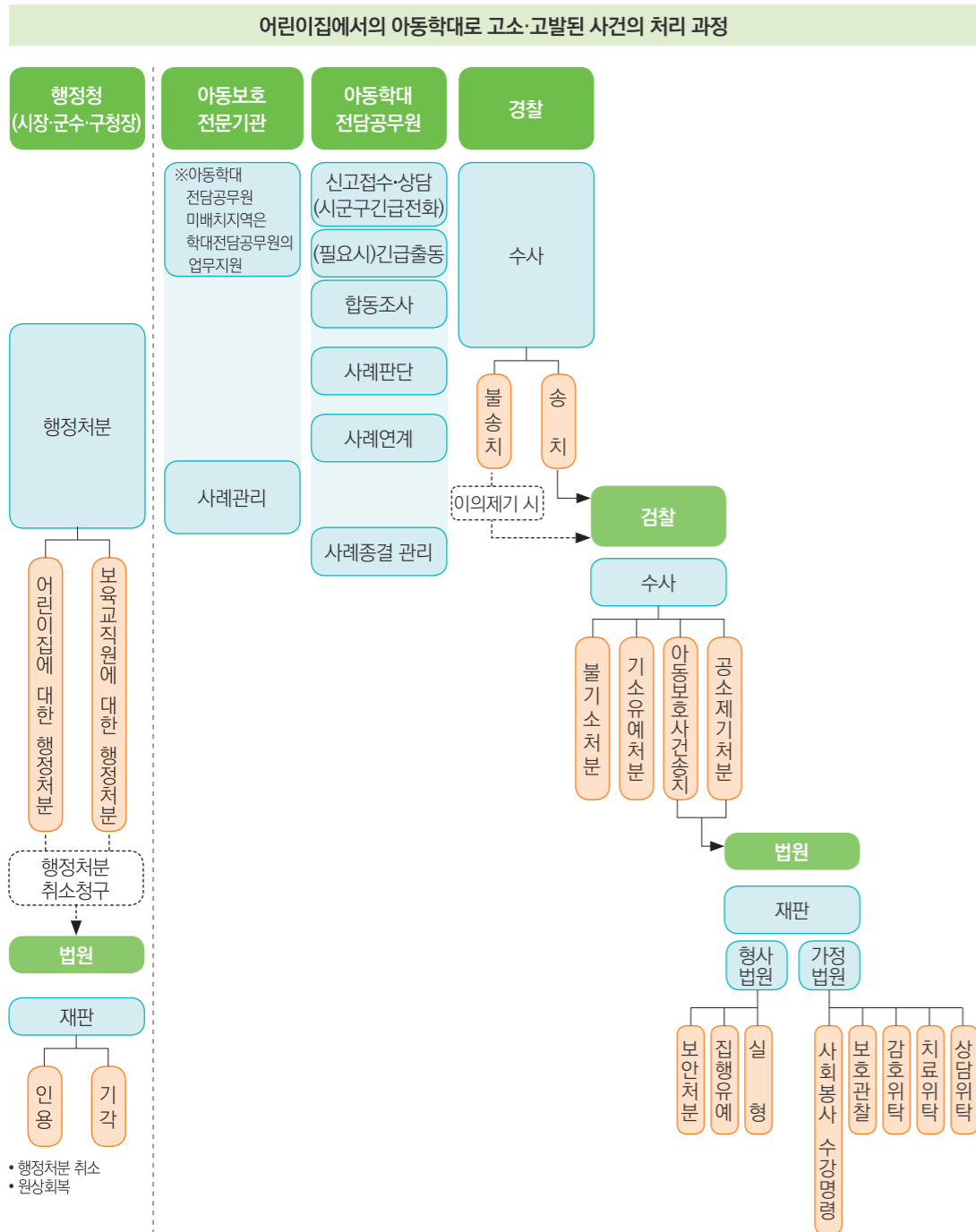
•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었을 경우 원장과 해당 사안에 연루된 보육교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수사 개시된 사건에 대해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으며,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교직원에게 학대신고 조사절차에 협조하도록 권유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된 영유아, 보호자,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의심)에 대해 고소한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에게 합동조사 실시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등의 조사에 협조하고, 이들이 요청하는 자료 및 관련 서류를 신속히 보여주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언론의 정보요청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다른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언론의 요청과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관련 지침에 따르거나 가용 자원이 있을 경우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에게 휴가를 주거나 다른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들이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 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에 연루된 보육교직원은 미리 그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조사 공무원 등과 만나는 과정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며,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 초기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 해당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건 조사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사안에 대해 설명한 내용, 사안과 관련이 있는 영유아, 보호자, 다른 보육교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관련된 정보 기록, 목격자 리스트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 보육교직원은 필요 시 해당 사안에 관련이 있는 동료 보육교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되,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나 진술할 내용에 대해 변경, 삭제, 추가 등의 압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해당 사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건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내용은 한 부를 복사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사건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내용의 경우에는 한 부를 더 복사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한다.
- 본인의 고용상태와 직무 조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지침에 따라 (무급) 휴가를 가야할 경우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지 등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처벌과 양형에 대하여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아동복지법 제74조).
-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사유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이 해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보호처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되는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이라 한다.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아동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처벌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록 자체는 남아 범죄전력 조회가 된다. 다음은 보호처분의 종류이다.
 - 1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감명령
 - 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호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행정처분
 -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통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제3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의 운영 정지 혹은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육교직원은 5년 이내의 자격정지, 자격취소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을 통해 위반사실(어린이집명, 대표자명, 원장명,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과 위반행위자(본인 이름, 법 위반 이력,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한 '위반 사실의 공표' 된다.
- 어린이집 폐쇄 등(영유아보육법 제45조)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아동복지법」 제3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고의나 중대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할 수 없음
 -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영유아보육법 16조)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중대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무자격 직원 채용, 보수교육 미이수(3년), 보조금 유용 등, 아동학대 행위의 경우 5년 이내의 자격 정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영유아 사망, 중상해 입은 경우 2년 이내 자격정지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및 재발급 기준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자격 취소 및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0년 이내 재발급 금지

PART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을 이해**하고
성 행동 수준별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I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

1. 영유아 성 행동과 성인의 태도
2. 영유아 성 행동 관련 용어의 정립
3. 영유아 성 행동 수준별 특성 이해

II 영유아의 성 행동 수준별 지도

1. 일상적인 수준의 성 행동 지도
2.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3.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4. 영유아 성 행동 지도 시 고려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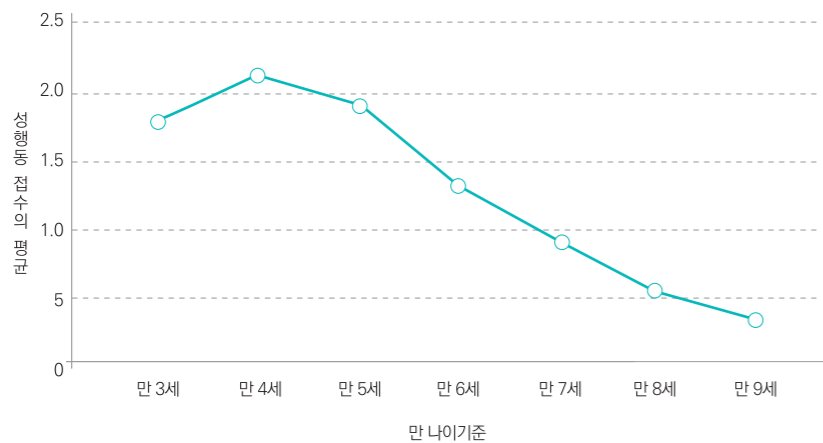
I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



1. 영유아 성 행동과 성인의 태도

- 최근 유아 간 성 행동문제 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과 성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반해 부모와 교사 등 대부분의 영유아 보호자의 성 의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 대책(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으로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대응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어린이집 및 지자체 등에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1)'이 배포되었다.
- 취학 전 유아와 초등저학년 아동 649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보고한 자녀의 성행동을 조사한 연구(강현미, 2022)에서 아동의 성 행동 표출은 유아기에 높아지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 영유아의 성을 출생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성장과 발달, 학습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의 발달수준'을 반영하며, 성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도하는 탐색적인 행동이 대부분이다. 영유아는 자신이 한 성 관련 행동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 행동 및 성 발달을 바르게 이해하여 적절하게 지도함으로써 영유아 성 행동이 성 행동문제로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 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영유아의 성 행동의 대부분은 발달 상 나타나는 행동특성과 유사하게 개방적인 공간에서, 호기심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인과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영유아를 낙인찍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보호자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착하세요. 대개 유아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나 부모가 차분히 대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혼란, 불안, 부끄러움, 분노감 등을 다룰 힘이 생깁니다. ✓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침착하고 차분하게 중지시켜 주세요. ✓ 다른 활동으로 관심과 흥미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하고 있는 행동을 간단히 정확하게 묘사하고, 문제 행동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때, 유아가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 우려할 수준 이상의 행동이었다면, 다음을 기록해 놓으세요. (예 : 그 행동의 내용, 맥락, 시간, 장소,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격을 받은 표정을 보이지 마세요. ✓ 유아가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언행을 나타내지 마세요. ✓ 우려할 수준이거나 혹은 위험한 수준의 행동이라면 못 본 척 무시하고 지나치기 마세요. ✓ 유아가 이전에 성 학대를 당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 유아를 지칭할 때 '가해 유아', '성 폭력 유아'라는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 주변인들과 정보공유로 사건을 이슈화하지 마세요. ✓ 해당 유아 앞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나 전화통화를 나누며 걱정하거나 화내는 행동 등은 자제해 주세요.



2. 영유아 성 행동 관련 용어의 정립

- 영유아 성 관련 행동에 대한 접근방법을 기초로 영유아 성 관련 행동에 대해 성폭력, 성폭행, 성학대, 가해 등의 용어 대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	의미
영유아의 성 행동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영유아가 해당 연령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에서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 행동 또는 행동에 따른 문제
피해 영유아	또래의 성 행동문제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영유아
행위 영유아	성 행동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음)



3. 영유아 성 행동 수준별 특성 이해

- (수준별 판단기준) 연령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동을 기준으로 '주의 전환 가능 여부', '지속성 및 반복성', '은밀한 행동', '강요 및 폭력성', '심신의 피해 발생' 등을 통해 판단한다.
- (영유아 성 행동 수준) 판단 기준에 따라 '일상적인 수준(초록색)', '우려할 수준(노란색)', '위험한 수준(빨간색)'으로 구분한다.

구분	수준	판단기준	행동의 특성
성 행동	일상적인 수준 (일반적인 성 관련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환 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를 제안하면 관심을 보인다. 예: 밀가루 반죽 놀이할까? 친구들은 지금 빵을 만들고 있대 교사에 의해 중지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예: 소변 볼 때 들여다보면 친구가 불편해 하지? 블록놀이 하러 갈까?
			+ 지속성, 반복성, 은밀
성 행동 문제	우려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성 반복성 은밀한 행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다른 놀이로 흥미를 끌어도 성 행동의 중단이 어렵다. 잠시 멈추었다가도 교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 성 행동을 반복하고 지속한다. 교사의 눈을 벗어나는 은밀히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 강요 및 폭력성, 심신의 피해 발생
성 행동 문제	위험한 수준 (또래 간 성적 괴롭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성 반복성 은밀한 행동 여부 강요 및 폭력성 타인의 심신 피해 발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다른 놀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영유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저항하거나 분노 행동을 보인다. 또래에 대한 강요나 괴롭힘,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며 교사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로 또래를 데리고 가기도 한다. 또래 영유아의 성기에 상처가 나거나 불안해하는 등 신체 정서상 피해가 발생한다.

- 일상적인 수준: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생기면서 남녀의 생물학적 생김새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나타난다. 또래 엿보기 등 일시적인 성 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신체 탐색 중 우연히 하게 되는 성기 자극 등의 성 관련 행동들을 일상적인 수준의 성행동으로 볼 수 있다.
- 우려할 수준: 일상적인 성 관련 행동이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반복되는 동시에 놀이에 대한 관심이나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든다면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로 볼 수 있다. 우려할 수준에서는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 행동에 몰두하거나, 또래를 불편하게 하는 성 행동을 하며 성인의 눈을 벗어나는 장소에서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위험한 수준: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성을 띄게 되면 '우려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 영유아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뚜렷이 나타나거나 피해 영유아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의 경우 놀이에 대한 관심이나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간혹 성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하여 나타나는 우려할 수준을 거치지 않고 강요나 폭력성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성 행동 문제의 발견 횟수보다는 피해를 유발할 위험 정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영유아 성 행동 지도와 성 행동문제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 어린이집 교사 영유아 성교육 및 성 행동문제 대응 관련 교육 이수 지원 • 영유아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담당교사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요청 및 지자체 보고 등 외부 대응 총괄 • CCTV, 정황 자료 등을 보존하여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초기조사 협조
영유아 성 교육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으로부터 지정된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는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내 각 반 교사에게 전달 교육 실시 •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지도교육 상시 관리 •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및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교육 기획 • 영유아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요청 등 대응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로부터 전달 교육 이수(온라인교육 영상 활용) • 담당 아동에 대한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지도 및 관찰 •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지, 상황 파악 후 영유아 성교육 담당교사에 즉시보고(대응 매뉴얼, 대응 요령 숙지)



II

영유아의 성 행동 수준별 지도



1. 일상적인 수준의 성 행동 지도

- 일과 중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지도하는 경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및 행동	성 행동 지도방법
• 자신의 신체 탐색 중 우연히 하는 성기 자극 등의 성 행동	→ • 다양한 흥미 중 하나로 나타난 행동이므로, 흥미를 보일만한 놀이로 관심 전환한다.
•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놀이를 찾지 못하는 지루한 상황에서 하는 성 행동	→ • 편안한 분위기에서 잠들 수 있도록 재워주고, 흥미 있는 놀이를 찾아 놀이상대가 되어준다.
• 갑작스런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불안감에 의해 나타난 성 행동	→ •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모면담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한다. • 흥미 있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
•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해 시도하는 보여주기, 엿보기 등 성 행동	→ • 성 행동에 주목할수록 자꾸 하려고 하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유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다.
• 놀이중성역할에 대한모방행동으로서 표현하는 성 행동	→ • 역할에 대한 표현행동 중 하나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역할 표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준다.
• 남녀의 성적 특징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도래 엿보기 등 일시적인 성 행동	→ •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표현이므로 일시적 행동으로 반응한다. •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통해 남녀 신체의 차이를 알려주는 등 관심을 해소시켜준다.
• 성적 자극이 많은 환경으로 인해 성에 대해 강한 흥미와 관심을 표현하는 성 행동	→ • 성과 성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므로, 남녀 성기의 차이점에 대해 성교육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알려주며 관심 수용한다. • 흥미를 가질만한 놀이를 제공하여 관심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켜 준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0). 영유아 성 행동 이해(교육용 영상 시리즈 10편). [유튜브에서 제목 검색 시청 가능]



• 활동으로 구성하여 지도하는 경우

첫째, 경계 존중 : 너의 공간, 나의 공간

- 나만의 공간이 있어요 -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 알고 존중하기
- 내가 손잡아도 될까? - 동의 구해야 할 상황 인지하기
- 장난으로 친구의 몸을 만져도 될까요? - 타인 신체와 의견 존중

둘째, 신체 안전 :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 나와 타인 신체 존중
- 비밀, 약속, 규칙은 다 지켜야 하나요? - 지키지 말아야 하는 비밀, 규칙, 약속
- 안전지킴이의 도움을 받아요 - 위험 상황 인지 및 도움 요청

셋째, 관계와 접촉 : 친구 사이 지켜야 할 예의

- “좋아”, “싫어”라고 이야기해요 - 내 몸이 나의 것임을 인지하고 의사 표현하기
-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좋다는 걸까요? -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비동의 인지하기
- 친구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 위험 인지하고 친구 도와주기

[참고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3종)
 [포털에서 제목 검색,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 행동 특성 및 사례

행동의 특성	행동문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거나 행동에 몰두한다. • 또래에게 성 행동을 하여 불편하게 한다. • 피해 영유아가 피하려 해도 계속하기도 한다. • 성인의 눈을 벗어나는 장소에서 시도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영유아가 싫다고 해도 엿보는 행동을 반복한다. • 성적인 행동과 연관된 동작을 흉내 내는 행동을 한다. (보보할 때 혀를 내밀어 입에 넣으려하기 등) • 또래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만져보려 하는 행동을 한다.

• 지도 및 대응 방법

대응방법	내용	담당
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되는 행동 중지한다. • 관련 영유아를 떼어 놓고 상황 파악한다. 	교사
원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된 행동과 상황을 원장에게 보고, 기록한다. 	교사
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보고 사실 확인한다. - 해당 반 상황 및 관련 영유아 행동 관찰한다. - 필요시 교사의 부모면담 지원, 부모면담 직접 실시한다. 	원장
부모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게 상황 설명,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지도하도록 한다. • 필요시 전문가 도움 권유한다. 	교사, 원장
외부지원 요청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전문가 자문 및 지원 요청한다. 	원장
환경점검 및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환경 및 보육일과 점검(낮잠시간 등 하루 일과가 지루하거나 교사관리가 미비한 시간대 확인 등), 개선사항 살핀다. • 개별 상황에 따른 행동지도 계획, 실행한다.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및 영유아 교육 - 성 행동문제 개선 위한 교사 역할 및 영유아 성교육 실시 • 부모 대상 교육 실시(필요시) 	원장

3.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 지도 및 대응

• 행동 특성 및 사례

행동의 특성	행동문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저지하거나 주의 돌릴 때 저항, 분노한다. 행위 영유아와 피해 영유아 간 연령 및 힘의 차이가 뚜렷하다. 피해 영유아가 거부해도 고의적, 강압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한다. (피해 영유아 고통스러워 함) 피해 및 행위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나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에게 성적 놀이에 참여하라고 강요한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보여주거나 강압적으로 만진다. 지속적으로 타인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한다. 성인의 성 행위를 명백하게 흉내 낸다. 피해 영유아의 신체에 물체나 성기 집어넣는다.

• 지도 및 대응 방법

대응방법	내용	담당
상황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각 개입하여 행동 중지한다. 영유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된 태도 유지한다. 	교사
원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한다. 	교사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은 교사 보고 받은 즉시 신속히 상황 파악, 부모에게 연락한다. 행위 영유아, 피해 영유아를 서로 다른 공간으로 분리 보호한다. 모든 영유아의 안전 확인한다. 	교사 원장
외부 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외부에 초기조사 및 자문 요청한다. 	원장
상황 파악 및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 및 사건 경위만 기록(원장 협조)한다. - 초기진술의 오염 방지를 위해 영유아에게 추궁, 반복, 추가질문하지 않는다. 	교사 (원장)
부모 면담 및 조치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면담 통해 상황 설명, 전문기관 협조 요청 사항 전달한다. 조사 기간 등원여부 협의(행위 영유아와 피해 영유아의 분리를 위해 행위 영유아 일시적 가정양육 권고 등)한다. 피해 영유아 치료방안 논의한다. 	원장

외부 기관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기관, 공무원이 초기조사 실시한다. - 가능한 영유아 스스로 말하도록 개방적 질문 사용하여 조사한다. - 초기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CCTV보관, 사진(발생 장소, 상처 등), 사건경위 기록, 부모면담 기록 등의 자료 확보한다. - 지자체 사례회의 개최 여부 판단 및 어린이집 자문 제공한다. 	원장
----------	--	----

환경점검 및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환경 및 보육일과 점검, 개선사항 살핀다. 원장 지도하에 개별 행동지도 계획, 실행한다.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에 따라 교사 역할 지도 및 영유아 성교육 실시한다. 자문에 따라 부모설명회 및 부모대상 예방교육 실시한다. 	원장

• 영유아 간 성 행동문제에서의 영유아 보호와 갈등 해결을 위해 관련 성인들의 감수성 있는 태도와 모든 영유아를 보호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취학 전 기관의 교사, 부모 등 아동 주변의 성인들은 영유아의 성적 행동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상이하며, 매우 다양하게 반응한다. 부모는 행동이 상호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도 대개는 다른 영유아가 가해자이고 자신의 자녀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영유아기관의 종사자나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를 성학대 혹은 성폭력의 틀(child abuse frame) 보다는 커다란 행동문제(problem behaviors)의 범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아동을 ‘교육’하고, 부모에게 ‘보고’하고,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 이런 간극이 자칫 관련 성인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성인들 모두 사안에 대해 **감수성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또래의 성 행동문제에 의해 심신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를 피해 영유아로 부르되, 성 행동문제를 나타낸 영유아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영유아 간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의 주요 목표는 영유아들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 지원이며, 대응체계의 우선적인 목표는 영유아들의 물리적, 심리적, 발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위해적인 성 행동의 피해 영유아, 행위 영유아 모두에게 해당된다.

• 먼저 피해 영유아의 경우, 연령에 적절치 않은 성적 경험이 유발할 수 있는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이해는 물론 심한 경우 성적인 위해로 인해 두려움이나 수치심 등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재발을 막고 필요한 치료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영유아의 안전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해적인 성행동을 한 행위 영유아의 안전 역시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위 유아에게는 자신이 한 행위가 왜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어 행위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영유아 성 행동 지도 시 고려할 점

활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유아가 자위행위를 한다. • 4세 유아가 또래의 벗은 몸에 관심을 가진다. • 5세 유아가 의사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또래의 옷을 벗기려는 행동을 한다. • 6세 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친구를 안고 보뽀한다. • 7세 유아가 이성인 동생을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신체 접촉을 한다. 	

<영유아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

성 개념	획득 시기	발달적 특성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 행동 예
신체에 대한 탐색	0~1세	• 우연한 상황 등에서 신체의 감각적 느낌을 탐색	• 기저귀를 갈거나 몸을 씻겨줄 때 감각적인 느낌에 반응하기도 함. • 자신의 성기를 보거나 만짐
성 정체감 인식	2~3세	•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성을 구분할 수 있음	• 벗고 돌아다니기 • 가족이나 또래의 벗은 모습에 호기심을 나타냄 • 자위행위가 나타나기도 함
성 안정성	4~5세	•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성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됨. 남자아이는 아빠가, 여자아이는 엄마가 될 것이라고 믿음	• 엄마아빠 놀이 시 행동 모방 • 아기 태어나는 과정, 의사놀이 시 옷 벗기려는 행동 (성적 행동인지 단순한 모방 행동인지 구분 어려움) • 일시적으로 화장실 엿보기 • 자위행위가 나타나기도 함
성 일관성	6~7세	• 외모나 행동, 옷과 같이 외형적인 변화가 있어도 성이 변하지 않음을 인식	• 이성에 대한 호감을 가까이 앉거나 서기, 껴안거나 보뽀하기 등으로 표현 • 그림 그릴 때 성기를 묘사하거나, 일상적 대화 소재로 삼음 • 일시적으로 화장실 엿보기, 자위행위가 나타나기도 함

<출처: 보건복지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8).,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 영유아 성행동은 대부분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막상 영유아의 성행동을 보게 되는 교사는 판단이 쉽지 않다. 일상적인 수준인지, 우려할 수준인지 파악이 쉽지 않다. 오히려 위험 수준 행동은 상대적으로 파악이 쉬울 수 있다. 위험 수준 행동은 누구라도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교사는 영유아 성행동을 하면 판단이 필요하고, 판단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한다. 영유아 성행동 수준을 판단하는 이유는, 수준에 따른 개입방법(지도 내용 및 방법 등)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유아의 성행동은 다양하며, 드러난 성행동만으로 성행동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 일상적인 수준의 성행동으로 보이더라도 '그럴 수 있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해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가 올바른 성인식 및 성행동을 하도록 지도해야하기 때문이다.
- 자위행위는 아마 영유아가 가장 많이 보이는 성행동 중 하나일 것이다. 예를 들어 3세 유아가 자위행위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럴 수 있는 행동'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3세 유아의 자위행위는 일상적인 수준의 행위로 판단하면 되는 걸까? 자위행위 자체만 본다면 당연히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위행위가 또래들이 보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성행동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행위 유아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본 다른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성행동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즉 성행동 발생 시 성행동 유형뿐만 아니라 영유아 연령, 발생 시간 및 소요 시간, 장소, 빈도, 혼자 하는 행동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인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교사들이 성행동 개입을 어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행동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을 보다 촘촘히 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피해 유아와 행위 유아 포함하여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보다 적절한 지도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행동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보자. 아래에 제시된 항목은 모든 성행동 시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수준의 성행동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관심 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면 중지되기 때문이다.



영유아 성행동 Check(예시)

- ✓ 영유아의 연령은? 매뉴얼 등에 근거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는가?
- ✓ 단순 모방 행동으로 보이는가? 모방 행동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
- ✓ 성행동이 일시적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반복적이라면 교사가 목격한 성행동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언제 그 성행동이 나타나는가? 어디서 하였는가? 성행동 시 행위 유아의 표정은 어떠한가?
- ✓ 가정에서도 동일한 성행동이 있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누구 앞에서 하는가? 어디서 하는가?
- ✓ 개입 시 관심 있는 행동으로 전환한 경우 행동이 중단되었는가? 개입 이후 동일한 성행동이 나타난 적이 없는가?
- ✓ 성행동에 대한 지도(올바른 성행동에 대한 설명 등) 이후 행위 유아가 보이는 행동은 어떠한가?
- ✓ 성행동이 혼자 하는 행동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고통)를 주는 행동인가?
- ✓ 피해 유아가 행위 유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자기표현을 하였는가? 언어적인 표현뿐만 비언어적인 표현(표정, 침묵, 손 행동 등)은 어떠한가? 등

활동	옆 사람과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 유아 간 성 행동문제로 보호자 간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쪽 보호자는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문제라 생각하고, 다른 쪽 보호자는 위험한 수준의 성 행동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 특히 발생 상황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의 성행동을 이해하고 지도를 위해서는 드러난 성행동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유아 성행동은 호기심에 따른 행동이거나 단순 모방 행동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성행동 뒤 숨은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가 보이는 우려할 수준의 행동이나 위험한 수준의 행동의 경우 영유아 개인적 특성이기보다는 영유아가 처한 환경의 영향이나 어른의 잘못된 대응(무시, 통제적, 폭력적 개입), 지식 부족(나이가 어려 몰라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성행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 성행동 목격 시 부정적인 인식(예, 어린애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을 하기 보다는 성행동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기관) 연계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성행동은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성행동 발생원인, 성행동이 나타난 상황 및 맥락, 양육자와 교사 등 보호자 대응 방법 및 내용 등 점검을 통해 판단 및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지도 시 유의할 점은, 일상적인 수준의 성행동을 강압적이고 통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문제행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성인식 점검과 감수성이 중요하다. 유사 상황에 대한 교사 간 대응 방법, 지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태도가 이후 영유아의 성인식 및 성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사로서 준비가 필요하다.



PART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아동 성폭력·실종 정의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성폭력·실종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I 아동 성폭력 예방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정의
2. 아동 성폭력 특성
3.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예방교육 방향
4.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경계존중' 중심으로)
5.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

II 아동 실종 예방

1. 실종에 대한 이해
2.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
3. 실종 유괴 예방 수칙
4.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실종 예방 관련 정보



I 아동 성폭력 예방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정의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즉 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힘을 악용·남용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폭력이므로 성희롱, 성착취, 성매매 등도 모두 포함되지만, 협의의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관련 법률에 명시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폭력은 법률마다 아동 보호 연령이 다르므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폭력 관련 대표적인 법률에서의 아동 보호 연령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형법」은 16세 미만의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관련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p> <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p>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p> <p>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 성폭력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의, 힘의 차이,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힘의 차이, 동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상호적인 개념으로, 이 3가지 개념을 이해하여야 앞으로 제시될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과 예방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1) 힘의 차이

-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성별을 비롯하여 물리적 힘, 사회적 지위, 지식, 연령, 장애, 인종, 경제력 등의 차이가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힘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들이 관계 속에서 작동되어 가해자가 힘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때 성폭력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힘의 요소는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교차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은 다르게 작동된다. 법률에서 아동의 연령을 명시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도, 아동의 사회적 위치, 특성, 취약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이해 및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다.
- 아동 성폭력은 강자가 약자인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약자인 피해 아동이 성폭력 상황에서 강자인 가해자를 상대로 대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힘이 어떻게 작동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아동의 삶 속에서 가해자와의 관계와 성폭력 발생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성폭력과 성인지 감수성

- 일상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성별고정관념,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상호존중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가치이자 실천방향을 말한다(이현혜, 2020).
-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처음 대법원 2018. 4.12.(2017두74702 판결)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중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성인지 감수성은 성희롱, 성폭력 판단 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 시에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를 반드시 다루도록 하고 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잘못 대처(가해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아서 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힘을 남용·악용을 했기 때문이며, 가해가 가능한 것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만든 사회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회구성원들이 모두가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해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져 있으면 분명 사회는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는 없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성폭력이 발생하면 여전히 피해자의 대처를 문제 삼고, 가해자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사회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식이 성폭력 발생을 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발생은 사회문화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회구성원의 성폭력을 바라보는 성인식 점검이 중요하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다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자기 인식 점검으로,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폭력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은지 등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는 것을 말한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회 문화가 필요하며, 문화를 만드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

2) 동의

-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의'는 중요한 개념이다. 물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동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으나 성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성적 행위에 있어 동의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자발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동의 개념에 대해 동일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Yes'를 한 상황을 말하며, 이것이 '진정한 동의'다. 즉 성적행동에 대한 동의의 의미가 원치 않는 성적행동에 대한 거부 의사(No)보다는 긍정적인 의사(Yes)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현이나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의사표현이나 침묵은 동의라고 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동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자의적으로 동의 또는 합의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동의는 성적 행동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 반복, 취소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특히 동의는 '평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하려는 성적 행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 성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락한 것이어야 하므로, 아동의 경우 동의의 개념을 모를 수 있으며, 가해자에 의해 강요된 동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동은 동의로 볼 수 없다. 아동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인지 상황에 대한 맥락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인 어른이 아동에게 성적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폭력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성적자기결정권

-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의지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행위를 해서는 안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시 도래 간에 '장난이나 놀이'로 가장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경계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 성폭력은 가해자에 의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대처나 태도에 대해 함부로 판단, 해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당연히 주어진 권리이나 권리를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권리를 행사했을 때 불이익이나 위험이 따른다면 누구도 그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영유아는 어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위험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에게 저항할 경우 약자인 영유아는 폭력 등 또 다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약자인 피해 아동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으니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라고 지도하는 것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폭력 발생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아동 성폭력 특성

- 주로 유인에 의해 발생 : 폭행이나 협박보다는 애정, 칭찬, 놀이, 장난감 등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유인 방법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
- 폭력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 : 가해자의 협박, 위협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말하기 어려우며, 피해를 인식하더라도 성폭력 대처에 대한 비난 등 성폭력 발생 책임을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인식("너 왜 따라갔어", "왜 그 때 도망치지 않았어", "너 왜 빨리 이야기하지 않았어"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 피해가 지속, 반복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은 성폭력과 친밀감 구분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
-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 : 주로 아동이 아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아동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가해자가 '그루밍(길들이기)'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루밍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그루밍으로 인해 낯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고, 아는 사람은 '친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즉 아동에게 있어 가해자는 낯선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이고,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 친밀감과 성폭력 구분 어려움 : 아동은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특히 그루밍으로 인해 아동은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임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 아동에게 있어 가해자는 성폭력 발생 전까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아동일수록 가해자의 '가장된 친밀감'이 성폭력임을 인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성폭력을 하기 전에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가해자가 아동을 길들이는 이유는, 아동이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거나,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 그루밍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아동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길들이는 시간은 아동이 성폭력에 대해 말할 기회를 최소화시키도록 신뢰를 쌓는 데 쓰인다. 가해자에게 있어 아동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는 아동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동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 가해자가 제공하던 관심과 혜택이 중단될 수 있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가 자신에게 실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기가 어렵다.
- 그루밍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다양하다. 아동과 자주 마주치기, 아동과 친구 되기,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 주기, 농담하기, 마사지한다며 몸을 살피기, 옷을 입거나 목욕할 때 도와주기 등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하며, 성폭력을 할 때에도 아동에게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야"라고 말하여 성폭력임을 알지 못하게 한다.
- 심지어는 아동을 돌봐주겠다는 의도로 가정을 방문한다. 아동이 있는 곳에 자주 방문함으로써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방문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 의도는 아이를 향한 관심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함이다.

- 또한 부모 등 보호자와 먼저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 먼저 접근하는 이유는, 아동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으며, 아동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보호자와 먼저 친밀감을 형성한 이후이므로 아이의 말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 등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루밍은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아동의 경우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를 악용한 가해자에 의해 성폭력이나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루밍을 끊어야 한다. 아동이 가능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양육자에게 이야기하면 좋다. 아동이 언제든 교사나 부모 등 어른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루밍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의 관심과 소통이다. 어른에게 이야기하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루밍을 깰 수 있다.

〈출처 : 이현혜(2011). 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아동성폭력 예방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2022). 성폭력 예방교육 실제. 유치원·어린이집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개발.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예방교육 방향

1) 아동 성폭력 예방 패러다임 변화

-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이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 역시 국가 정책적 대상이 되어왔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서구의 성폭력 예방 전략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전략적 패러다임을 수정한 바 있다.
- 첫 번째 성폭력 예방 전략은 ‘결함중심 접근(deficit-oriented approach)’이다. 이 전략은 성폭력에 수반될 수 있는 살인이나 상해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성폭력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자는 저항이나 도피를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권고하였다.
- 두 번째 성폭력 예방전략은 ‘능력중심 접근(ability-oriented approach)’이다. 1983년 미국성폭력대책연합(National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NCASA)은 결함중심 예방적 접근을 비판하고 성폭력 위험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능력중심 예방 전략은 아동과 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대처 기술을 익힐 것을 권고한다.
- 능력중심 전략과 같은 전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동에게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아동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를 강화하며 아동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 예방의 부담을 과도하게 지워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아동 성폭력 예방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아동 성폭력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대부분은 아동의 통제범위 밖에 있다. 아동에게 나이가 많고 힘이 세며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어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 즉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강조하는 예방 전략은 아동 성폭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아동에게 성폭력 발생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전략은 불가피하다.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예방전략’은 아동 성폭력은 아동이 아닌 성인의 책임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고 본다. 아동 성폭력의 책임은 지역사회 구성원, 기관, 조직 등 사회 전체에 있으며, 지역사회는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할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역사회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여러 노력 중의 한 요소에 불과하며, 결국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2)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방향

-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른이 주 대상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어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현재 우리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 위기 시 “싫어요, 안돼요”라고 큰소리로 말하거나, 소리를 질러서 저항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교육(일명 “싫어요” 교육)’은 어른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성폭력 발생 시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했다(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성폭력 발생이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지게 되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성폭력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피해 아동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아동에게만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과 어른 모두가 함께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싫어요” 교육은 성폭력 상황에서 저항의 표현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기표현 훈련이 되어야 대처도 가능해질 수 있다.
- 따라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발달,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양육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며,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의 아동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을 직간접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어른이, 사회가 아동보호를 위한 예방과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성폭력의 문제를, 불안난을 하면 위험하다고 말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가해의 위험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폭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의 시작이다.
- 아동 성폭력 예방의 기본가치는 아동 권리 및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식 습득과 올바른 성인식이 필요하다.

4.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경계존중’ 중심으로)

1) 아동의 자기표현 훈련

-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그루밍(grooming)을 끊는 것이 핵심이다. 그루밍을 깨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하루 동안 자신이 경험한 일을 부모 등 신뢰로운 어른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연습은 아동에게 자기표현 능력을 키워주며, 범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의사소통은 아동의 취약함을 줄여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동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닌 관심을 통해 아동과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동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동이 어떠한 이야기(잘못한 것이라도)를 하더라도 경청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등이 누구인지 알고 양육자, 교사 등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라도 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라는 것도 함께 알려준다. 이것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다.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 등 아동이 있는 어떠한 장소이든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동 안전을 위해 신뢰로운 어른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2) 일상에서의 ‘경계존중’ 실천

- 아동 성폭력 예방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경계 존중이 필요하다.
- 만원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옆 사람과 밀착되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존중해야 하는 사적(私的) 영역이 있다. 이를 경계(boundary)라고 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경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경계(boundary)에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언어적·정서적, 시각적 경계가 있다. 개인 간 친밀도나 상대방과의 관계 유형, 신뢰관계에 따라 경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르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경계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적 경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침해하면 갈등이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자신은 원치 않는데 몸을 만지면 기분이 나쁜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계 존중은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태도이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나와 상대방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일이다. 효과적인 경계존중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양육자 등 어른들이 먼저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사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실천하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아동이 건강한 경계를 만들 권리가 있음을 독려하도록 한다.

- 경계존중은 폭력, 성폭력 예방 등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계존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으로,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성폭력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힘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여 상대방의 사적인 경계를 일방적으로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경계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기본 가치로 전제되어야 한다. 경계 침해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다는 것은, 성폭력, 괴롭힘 등이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성불평등을 포함한 위계 속에서 약자의 입장에 놓인 사람의 상황과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관계의 평등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위치에 따른 영향력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경계존중의 핵심인 이유이다. 사람과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경계를 일방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 따라서 어릴 때부터 사적인 경계가 있음을 알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으며, 상대방의 경계를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인식하는 것은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아동 대상 교육 시 경계존중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 간에도 부적절한 성적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규칙을 함께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즉 친구 등 친한 사이라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불편한 표현(언어적, 비언어적)을 하면 즉시 중지하고 사과해야 함을 알려준다.

활동	안전 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안전 계획 세우기(양육자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 ✓ 어린이집에서 안전 계획 세우기(선생님과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 ✓ 인터넷관련 안전 계획 세우기(스마트폰, 유튜브 동영상 등)





- 아동에게 경계존중을 알려주어야 하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경계존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히 친밀하다고 경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래 간에 ‘친하니까’, ‘아는 사이니까’, ‘장난으로 한 행동이니까’ 등의 이유로 경계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동의 받지 않은 경계 침해 행위가 많아지면 친밀감과 신뢰감이 깨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경계존중을 실천하면 친밀감과 신뢰감은 높아지고, 소통 역시 보다 잘 이루어지게 된다.
- 이는 또래 간뿐만 아니라 교사와 아동 간에도 동일하다. 교사 역시 아동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교사가 경계존중을 실천할 때 아동은 자연스럽게 교사 행동을 모방하게 되어 경계존중을 보다 잘 실천하게 된다. 경계존중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아동 주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태도를 보여야 하므로 부모(양육자) 교육 시 가정에서도 경계존중 실천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 경계존중을 어릴 때부터 실천한 사람은 ‘권리 존중’의 의미와 ‘동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정서적 폭력을 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는 것으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제 발생 시 상대방 탓을 하거나 상대방에 의존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주체적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경계존중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폭력 예방 및 '건강한 관계 맺기'를 위한 시민교육으로 일상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경계 침해는 사회 문화와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사회가 약자에 대한 경계 침해를 쉽게 수용할 경우 경계 침해는 지속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어떤 문화를 가진 사회를 만들 것인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경계존중을 시민교육으로 모두 함께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다.

-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사적 경계를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아동이 사적 경계를 침해당하였을 때는 교사, 양육자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① 경계 유형(예시)

성폭력 예방교육 시 신체적 행동이나 성적 행동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일상에서의 다양한 경계 침해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태도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은 경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물리적(물건, 장소 등) 경계에 대해 먼저 알려주어 '경계'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는 실제 교육 시 어린이집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계 침해 사례를 예시로 경계 개념을 알려주는 것도 좋다.

물리적 경계 침해 	신체적 경계 침해 
- 노크도 하지 않고 방문을 벌컥 열기 - 상대방의 물건(장난감, 학용품, 옷, 책 등)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 빼앗기 등	- 꼬집기 - 깨물기 -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 - 배나 옆구리, 가슴 등 찌르기 - 원치 않는 신체 접촉하기(어깨 주무르기, 엉덩이를 툭툭 치기) 등
언어적·정서적 경계 침해 	시각적 경계 침해 
- 욕설하기 - 비웃기 - 위협하기 - 거짓말하기 - 화내기 - 따돌림 - 차별적인 말하기 등 - 비난하기 - 무시하기 - 간섭하고 괴롭히기 - 소리지르기 - 싫다고 하는 데도 계속 따라다니기 - 외모 평가하기	- 친구 몸 훑쳐보기 - 자신의 몸, 특정 부위를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 허락받지 않고 사진 찍기 - 인터넷이나 SNS에 허락받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기 - 사진이나 동영상 등 불법영상물, 성착취물을 보여주거나 (전송하거나) 보라고 강요하기 등

※ '경계 침해'와 '장난(재미)'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위를 한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 즐거우면 장난이라고 한다. 아니다. 장난(재미)이 되려면 자신과 상대방이 즐거울뿐만 아니라 제3자가 봐도(누가 봐도) 즐겁고 재미있는 행위여야 한다.

② 경계존중 원칙('동의' 중심으로)

경계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어야 하며, 권리, 동의와 (성적)자기결정권, 소통에 대한 개념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계존중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아야 하며,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해야 할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대방이 "No"라고 하면 수용을 해야 한다. "No"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이다.

셋째,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할 경우 "No"라고 말한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걱정,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No"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잘못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경계를 침범할 경우 그 책임은 경계 침해를 한 '가해자'에게 있다.

③ 일상에서의 경계존중 실천 : '동의' 중심으로

동의를 핵심은 '소통'이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과 동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 간에 얼마나 소통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동의'인지 판단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의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것 이상의 소통과정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린 뒤, 이를 존중해야 한다. 혹 거부나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물론 때로는 동의를 구했으나 아동이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자의적으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동의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어떻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한 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물론 상대방은 동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유 의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된다. 상대방과의 관계, 친밀도와 신뢰도 등에 따라 자기표현의 방법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핵심은 원치 않으면 거절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거절을 했음에도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활동	<p>7세 아동(S)이 5세 아동(F)을 갑자기 뒤에서 포옹을 했다. 자신보다 어린 5세 아동이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F의 표정이 좋지 않다. 이 상황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자.</p>
	<p>① S, F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생각해보자. (만약 S, F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는 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일까요? F가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뭘까요? F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S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F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반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S는 F가 귀여워서 안아보고 싶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 S가 F에게 “안아도 돼?”라고 말하면 F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 F의 반응에 따라 S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다릅니다. S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p>② 교사로서 S, F 각 아동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 동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도할지 생각해봅시다.</p>

아동이 ‘동의’ 용어를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동의 개념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신발 끈을 묶는 것을 도와줄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예로 오이를 먹으라고 권할 때 만약 오이를 싫어하는 아동이라면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동들은 동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다. 다만 연령을 고려하여 동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때 아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면 된다.

5.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처

1) 성폭력 발생 시 교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교사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당혹감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분노, 피해자에 대한 안쓰러움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 많은 아동들은 너무 어려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고, 어른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변 어른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보이는 태도나 반응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이 때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피해 아동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교사의 태도에 따라 피해 아동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당연히 아동의 회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를 입었어도 아동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일상에 잘 적응하는 경우 핵심은 양육자, 교사 등 주변 어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이다.
- 따라서 처음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이후 사건 처리와 아동의 회복과 관련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언제, 누가 자신을 찾아와 피해 사실을 말할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태도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기억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즉 교사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성폭력 피해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여, 피해 아동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아동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을 말해 주고,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아동은 가해자를 의심 없이 따라갔기 때문이라든가, 피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해서 성폭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평소 자신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등 자신이 ‘나쁜 아이’였기 때문이라는 등 자신의 잘못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자책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② 아동에게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용기 있게 말을 해 준 아동에게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③ 아동이 말한 내용을 믿어준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성폭력임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린 아동이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아동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자신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한다.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 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지, 혼나지 않을 지 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발적으로 사실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 들은 교사가 아동을 비난하거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아동은 자신의 말을 철회하게 된다.

④ 아동의 말에 침착하게 반응한다(감정 조절하기).

피해 아동은 어릴수록 자신이 겪은 일이 어떤 상황인지, 성폭력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경우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가 흥분하거나 피해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너 왜 OOO를 따라갔어?”, “왜 도망치지 않았어?”, “왜 빨리 말하지 않았어?” 등)을 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축소하거나 자신이 말한 내용을 철회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침착하게 반응을 하고 말을 해 준 것에 대해 용기를 주어야 한다. 만약 아동이 말을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조바심내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⑤ 경청을 하되, 아동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동이 성폭력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어야 한다. 피해 아동의 감정과 반응을 존중하고 위로해주어야 한다. 아동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성폭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며, 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의해야 할 점은 상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강요하듯 질문하지 않아야 하며, 아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용어나 단어로 그대로 표현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세부사항을 묻거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진술이 오염되어 가해자 처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⑥ 지침이나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거나 소문 등에 의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른 처리절차대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동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되면 원장에게 보고, 양육자에게 연락하여 사안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설명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 연락을 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피해 아동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교사는 관련 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이 피해 아동의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피해 예방도 가능하게 된다.

2) 성폭력 피해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성폭력 피해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구분	소개	연락처 등
 <p>해바라기 아동센터</p>	(아동)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중심의 종합 서비스와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 및 보호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는다.	http://www.child1375.or.kr 1899-307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p>아동보호전문기관</p>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http://www.korea1391.go.kr 아동지킴이콜: 112
 <p>여성긴급전화 1366</p>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지원센터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이 필요한 여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신고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한다.	https://www.women1366.kr 전국 어디서나 1366/ 1년365일 24시간 HOT-LINE운영



II 아동 실종 예방



1. 실종에 대한 이해

● 실종아동의 정의 및 유형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아동등이란 실종당시 만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실종 아동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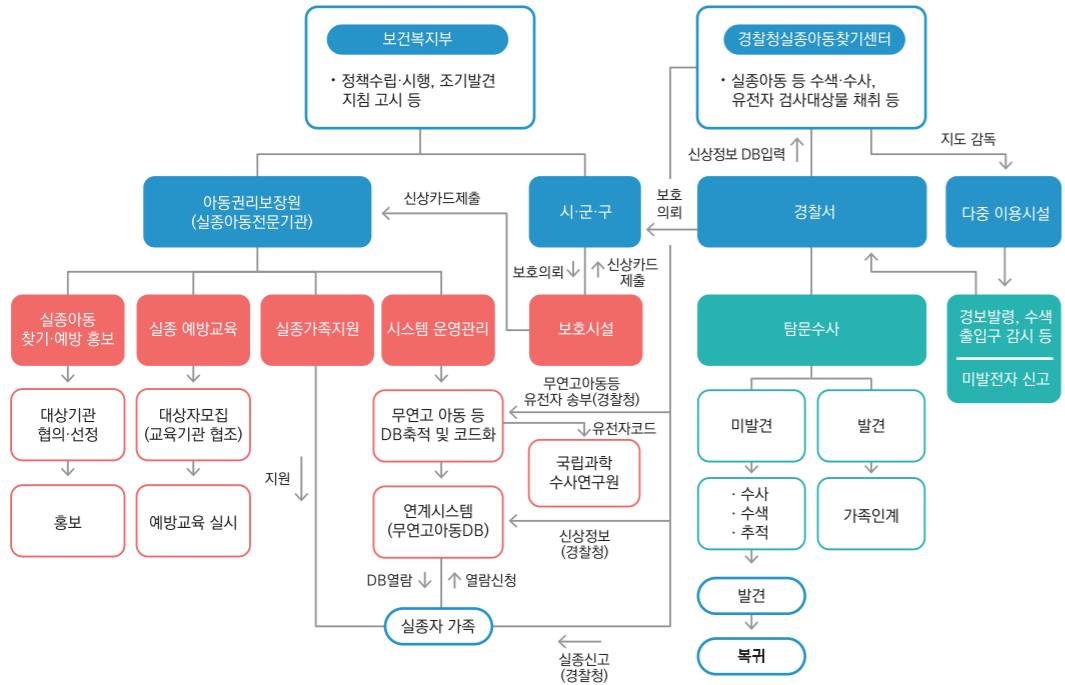
미아	유괴	가출	사고	유기
공공장소 등에서 아동이 길을 잃는 경우	금전, 성적 만족, 양육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아동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	사고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버린 경우

● 실종·유괴 예방교육 관련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

● 실종아동법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실종 아동 및 장애인: 아동권리보장원, 치매환자: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종을 예방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 실종아동 등 사업 체계도³⁾



● 실종아동 현황

● 2024년 기준 실종아동 신고 접수 건은 25,692건, 미해제 72건으로 최근 실종아동의 약 99%는 가정으로 복귀된다. 현재까지 미발견된 장기실종아동은 총 1,190명이며, 미해제건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경찰청, 단위: 건)

구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 누적	-	1,190	-	-	-	-
2020년	19,146	4	7,078	6	12,272	2
2021년	21,379	2	7,166	4	12,577	9
2022년	26,416	9	8,881	6	14,527	8
2023년	25,628	7	8,440	13	14,677	11
2024년	25,692	72	8,430	41	15,502	16

* 접수: 발생연도와 무관하며, 접수 당해연도 기준, ** 미해제: 접수연도와 무관하며, '24. 12. 31. 기준 산출 [출처] e-나라지표(www.index.go.kr).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3)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https://www.missingchild.or.kr)

● 아동 실종 사례

‘실종신고 50분만에 부모 품에’...김포시 CCTV활용해 실종아동 발견(경기일보, '25.2.9.)⁴⁾

... (생략)... 지난 2일 오후 3시44분께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소재 교회에 가족과 함께 방문한 아이가 밖으로 나간 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경찰 112 상황실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인근 순찰차들을 출동시켜 수색에 나서는데 한편 시 도시안전정보센터에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실종 아동의 인상착의와 함께 모니터링 요청을 받은 시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 관제요원 A씨는 즉시 집중 관제에 들어가 50여분 만인 오후 4시33분께 실종 신고된 곳으로부터 3km 떨어진 국도 48호선을 걷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알려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다. ... (생략) ...

“엄마 잃어버렸어요” 실종 아동 잇따라... ‘이것’ 하면 1시간 안에 찾는다(YTN, '24.8.22.)⁵⁾

“한 아이가 주택가에서 기저귀만 찬 채 울고 있다” 이런 내용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를 찾아 지구대로 데리고 왔는데요.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아이가 3살밖에 안 돼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혹시나 해서 아이의 지문을 조회해봤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수소문해 아이의 어머니와 간신히 연락이 닿았고, 아이는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 (중략) ... 특히 8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찾는 데는 평균 8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데, 사전 등록이 돼 있으면 35분이면 찾는다고 하네요. ... (생략) ...

어린이집에서 나간 10살 장애 아동 숨진 채 발견... “보호 소홀”(KBS, '22.6.18)⁶⁾

경남의 한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던 10살 장애 아동이 실종된 뒤, 인근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곳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던 특수학교 2학년 10살 A 군이, 어린이집 CCTV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은 지난 15일 오후 2시 25분쯤입니다. A 군은 1시간 40여분 뒤 어린이집에서 600m가량 떨어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중략) ... 당시 어린이집은 주변 논에서 5살 이하 원생들의 모내기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 (생략) ...



4) 경기일보(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9580061)
 5) YTN(https://www.ytn.co.kr/_ln/0103_202408221502422201)
 6) KBS(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89255&ref=A)

• 실종으로 인한 문제

〈실종으로 인한 문제〉

대상	문제점 및 어려움
실종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단기적인 정신적, 심리적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 초래한다.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절망, 슬픔)으로 이어진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으로 실직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찾기 활동 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야기된다. 실종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으로 이혼 등 가족해체 유발한다. 실종아동을 찾는 중 형제자매에 대한 애정과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한 연속적 문제 발생 할 수 있다.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불안과 불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실종가족의 해체 및 경제적 문제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한다.

2.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

• 실종·유괴 예방교육 내용

- 실종·유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므로 생활 속의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황 판단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청각자료 등을 통한 역할극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실시주기(총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유괴범에 대한 개념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시청각 교육 사례 분석

(1) 미아예방교육

- 미아상황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고 길을 잃고 당황하면 평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아예방 3단계 구호를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며 안전요원, 아이와 함께 있는 성인, 경찰, 안전지킴이집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미아예방 3단계 구호〉

① 멈추기!	② 생각하기!	③ 도움 요청하기!
<p>1 멈추기</p> <p>길을 잃거나, 함께있던 부모님(보호자)이나 친구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제자리에 멈추고 기다려요. 그리고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혀요</p> <p>"장난의 부주의로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진 경우, 보호자가 가까운 장소에 있을 수 있으므로 멈춰서 기다립니다."</p>	<p>2 생각하기</p> <p>정확하게 나의 이름, 부모님(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것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p>	<p>3 도움 요청하기</p> <p>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둘러봐요. 그리고 경찰관이나 소방관, 다른 아동과 함께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해요.</p>

(2) 유괴예방교육

영유아는 무서운 인상의 모습을 한 사람을 유괴범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괴범은 오히려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영유아와 안면이 있거나 부모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므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부모(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아는 사람이어도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유괴범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직접 재연하여 역할극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며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면 분명하게 저항하도록 연습하되 저항하고 소리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을 분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동 유괴 범죄의 유형과 특성〉

유형	특성 및 지도방법	대처방법
호기심유발형	<p>아동이 좋아하는 것으로 호기심을 유발하여 유인한다. 예) 설문조사를 해주면 선물을 준다고 유인한다. 얼굴이 예쁘니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하거나 연예인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유인한다.</p> <p>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계심이 풀어지는 때를 노리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물건은 절대 받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p>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요." 라고 말해요.

〈아동 유괴 범죄의 유형과 특성〉

유형	특성 및 지도방법	대처방법
지인사칭형	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 이웃으로 가장하여 친근하게 접근한다. 예)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함께 이동할 것을 권유한다. 이름을 부르며 친분이 있음을 표현하며 유인한다.	따라가지 않고 “부모님께 먼저 여쭙볼게요.” 라고 말해요.
	이름이나 얼굴을 알고 있어도 반드시 부모(보호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지도해야 한다.	
동정심유발형	도움을 요청하며 아동의 동정심에 호소한다. 예) 팔을 다쳤다고 도와달라고 유인한다. 걸어가면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유인한다.	따라가지 않고 “다른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요.
	아동의 동정심을 이용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보상심리를 이용하는 유인수법이다. 정상적인 어른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직접 돕지 않는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한 행동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	
물리적 강제동원형	무조건 강제로 끌고 간다. 예)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가거나 차에 태운다.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큰소리로 외쳐요. (소리를 지르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던져서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요)
	아동의 공포심을 이용한 수법으로 되도록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며 도움을 청하도록 지도한다.	

〈유괴예방 3단계 구호〉



유괴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

- 유괴범을 자극하거나 불안함을 조성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 유괴범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 유괴범을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 마음을 진정시켜요.
 - 유괴범의 차량번호를 외워요.
 - 밥을 잘 먹고 건강을 지켜요.
 -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 실종·유괴 예방교육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실종예방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미아편·유괴편으로 구분되어 영상, 동화책 등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는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다.

〈누가 더 안전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종예방교육〉



3. 실종·유괴 예방 수칙

● 부모(보호자)가 알아야 할 실종·유괴 예방 수칙

- ①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세요.
 - 아동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한다.
 - 사전등록은 안전Dream 홈페이지(안전Dream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기 위한 제도

- ②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 잠시 외출한다고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지 않으며, 특히 아동이 잠든 틈에 외출하지 않는다.
 - ※ 아이사랑 3대 실천 사항: 혼자 두지 마세요, 굶기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 ③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 백화점, 마트, 시장, 쇼핑몰, 영화관, 공원 등 외출 시, 아동을 잠시라도 혼자두지 않는다.
 - 화장실을 혼자 가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도 위험하다.
- ④ 실종아동 예방용품 활용하세요.
 - 아동이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 착용한다.
 -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은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놓는다.
- ⑤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
 -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아동의 인적사항 적어놓는다.
- ⑥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
 - 아동의 하루 일과와 아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다.
- ⑦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
 - 정기적으로 아동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사전등록한 경우 아동의 사진을 정기적으로 변경)

〈장소, 상황별 실종·유괴 예방지침〉

놀이터, 공원에서 실종·유괴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가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약속한 시간을 지킨다. - 혼자서 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논다. - 보호자가 항상 지켜볼 수 있는 밝고 환한 곳에서 논다. - 누군가 다가와 유인하는 경우에는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친다. -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집에 혼자 있을 때의 실종·유괴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주위를 둘러보고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뒤 문을 연다. - 집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다녀왔습니다~”하고 큰소리로 인사하면서 들어간다. - 혼자 있을 때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되도록 전화 받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종· 유괴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살펴보는 습관 기른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숫자 버튼을 누르는 곳 앞에 벽을 등지고 선다. - 모르는 사람과 단 둘이 댄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면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린다. -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바로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 요청한다.

4.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및 실종 예방 관련 정보

● 실종 발생 시 대처방법

- ① 가까운 곳을 찾아보기
 - 집근처에서 실종 시 갈만한 곳이나 자주 다니는 경로를 따라 살펴보고 공공장소에서 실종 시에는 안내데스크나 미아보호소에 안내 방송 요청한다.
- ② 즉시 신고하기
 - 전화신고: 112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182)
 - 문자신고: #0182로 신고
 - 방문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
- ③ 주변관계망 통해 찾기
 - 자주 이용하던 매장 등의 교류 통해 실종 발생 시 협조 요청한다.

가)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아동실종예방수첩

〈실종예방 보호자 수칙〉

<p>아동이 사라졌을 때는?</p>	<p>침착하게 행동하기</p>	<p>주변 탐색하기(집)</p>
<p>주변 탐색하기(공공장소)</p>	<p>신고하기</p>	<p>도움요청하기</p>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사항 8)

- 아동의 이름
- 아동의 나이(생년월일)
- 실종된 일시와 장소
- 실종 된 자세한 경위
- 실종 발생 당시 아동이 입고 있던 옷차림과 신발, 소품, 신체특징 (얼굴모양, 머리모양, 흉터나 점 등의 여부, 안경 착용여부, 키, 몸무게 등)
- 아동의 최근사진(가능한 다른 모습이 담긴 최근 사진 여러 장)
- 부모 이름 및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주소

•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9)

- 아동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
- 가장 먼저 112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한다.
- 아동이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동의 부모를 기다린다. 아동이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떨어진 경우 아동의 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아동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래준다. 아동이 집에 간다고 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 아동의 의복이나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하여 이름이나 연락처 알아낸다.
- 백화점, 쇼핑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하여 실종아동 보호 안내방송을 요청해야 한다.
- 아동을 실종아동보호센터, 경찰서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동을 발견한 사람의 연락처 남겨 두어야 한다.

• 실종 예방 관련 정보

〈실종 관련제도〉

<p>아동안전지킴이집</p>	<p>위험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게 임시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한 제도</p>
<p>아동안전수호천사</p>	<p>신뢰성 있는 업체의 외근사원을 수호천사로 위촉하여 외근활동 중 아동보호활동을 하는 것(현재 야쿠르트 아줌마, 집배원, 태권도 사범, 모범택시운전자회, 학원차량기사 등이 활동 중)</p>
<p>코드아담 (Code Adam)</p>	<p>다중이용시설(백화점, 지하철 등)에서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 시설의 출입문을 즉시 봉쇄하고 내부를 수색하는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단계: 신고 접수(안내데스크) > 경보 발령 > 출입구 통제 등 감시 > 실종자 수색(10분 내) > 미발견시 경찰 신고 / 발견 시 경보해제 •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놀이공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 5,000㎡ 이상의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도시철도역사나 철도역사, 관람석 - 5,000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경마장 등
<p>엠버경보</p>	<p>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인상착의 등 인상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여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p>
<p>실종경보문자</p>	<p>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제보를 위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실종아동의 정보(나이, 인상착의 등)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제도</p>
<p>지문 등 사전등록제</p>	<p>실종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에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정보, 기타 인상정보 등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p>

8)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9) 출처: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

● 실종아동 등 신고처리 체계

-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 지구대·경찰서 신고 또는 182센터(실종아동찾기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청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되어 경찰관서에서 수색과 사후조치가 이루어진다.



● 어린이집 실종예방 TIP

[등·하원 시]

1. 어린이집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개폐관리를 해주세요.
 - 잠금장치, 영유아 손에 닿지 않도록 개폐장치 설치, 현관 앞 인터넷 모니터 설치
2. 영유아 귀가 시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주세요.
 - 귀가 동의서 작성하기(인계과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명시)
 - 다른 성인에게 인계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전화나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실내 자유놀이 시]

1. 영아반은 교실문에 안전문을 설치하세요.
2. 교사는 영유아의 이동사항을 항상 확인하세요.
 - 영유아가 화장실, 복도 등 보육실 외의 공간에 가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실외활동 시]

1. 실외활동 공간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대문, 출입구, 울타리 등을 통해 외부와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을 닫고 놀이를 합니다.
 - 외부인이 들어오며 문을 여는 사이 영유아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2. 산책을 하거나 동네놀이터를 이용할 때 수시로 인원을 파악하세요.



TIP

[야외활동(나들이) 시]

1. 수시로 인원을 점검하세요.
 - 건물에 들어가기 전/후/중간, 차량 승차 이전/이후, 이동 시 점검합니다.
2. 미야방지 물품(손목밴드, 목걸이, 명찰 등)을 준비하세요.
 - 유괴 방지를 위해 아이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3. 나들이, 산책, 견학 전 영유아가 입은 옷을 기억하세요.
 -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밖에 나가기 전 단체 사진을 찍어 두어도 좋습니다.
4.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이나 단체복을 입으세요.
5. 영유아에게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짝공을 정해주고, 서로 손을 잡고 교사를 보고 따라 이동 하도록 하세요.
6. 사전에 도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사간의 역할분담을 나누세요.
 - 자원봉사나 부모, 기타 교사 등 도움인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7. 영유아와 꼭 함께 이동하세요.
8.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대처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출처: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서울특별시)]

● 어린이집 아동 미야발생 시 대처 TIP

- 우선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곳에 되돌아갑니다.
- 함께 걸어가던 짝이나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 걸어오던 방향으로 가면서 아이를 찾습니다.
 - (아이들은 발달상 뒤로 돌아 걷기보다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걷는 성향이 있습니다.)
-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관계자·야외활동 관리자께 신속히 알립니다.
-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안내방송을 합니다.
- 경찰서(112)에 신고합니다.
- 영·유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팔거나 장난감이 있던 곳에 가봅니다.
- 일정 시간이 지나도 못 찾았을 경우 부모님께 신속히 사실을 알립니다.
- 아이를 찾은 후 원으로 돌아와 야외활동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오늘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영유아의 생각을 들어 본 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안전교육을 합니다.

[출처: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 행동 매뉴얼(어린이집안전공제회)]

<관련 사이트>

<p>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www.safe182.go.kr/index.do</p>	<p>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https://www.missingchild.or.kr/</p>
	



참고문헌 및 사이트

- 강현미(2022). 아동의 성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6 - 2020). 2016 아동학대 주요 통계 -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202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빈번 발생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설명서.
- 보건복지부(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건복지부·검찰청(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0). 영유아 성 행동 이해(교육용 영상 시리즈 10편).
-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 변신원·곽태영·이미경·강은숙·김정인·나영정·서영미·양혜원·이현혜·이희애·전해정(2018). 나의 성, 나의 인권. 성인권 교재(중).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4).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체험교육 방안: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 서울시·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자기체크리스트.
- 성남시(2020). 지금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대를 하고 계십니까?
- 안동현(2014). 체벌: 훈육인가 폭력·학대인가. 「훈육과 아동학대, 그 경계를 말하다」 (pp.41-51) 2014년 아동인권증진사업 국제아동권리포럼.
- 여성부(2008).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재.
- 이완정·최지영·김소향·김정신(2020). 어린이집 아동 성 관련 일탈 행위 대응 방안. 보건복지부.
- 이현혜·강은영·이현숙·하지영(2011).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실천매뉴얼개발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현혜(2011). 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아동 성폭력 예방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현혜(2016). 성인지 향상 및 폭력예방교육 표준교안 개발. 국방부.

- 이현혜 외(2020). (초등, 중등) 예비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부·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 이현혜(2022). 아동 성폭력 특성과 예방교육 방향. 에듀넷.
- 이현혜(2020).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연수원.
- 이현혜(2020).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격연수원.
- 이현혜(2021). 동의와 경계존중, 시도 교육청 양성평등담당관 연수. 경남교육청.
- 이현혜(2022). 아동 성폭력 발생 단계 및 그루밍의 위험성. 유치원·어린이집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개발.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현혜(2022). 성폭력 예방교육 실제. 유치원·어린이집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개발.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현혜(2023). 아동인권 이해와 실천- 아동 성폭력 중심으로 -. 보육교사 교육과정.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 이현혜(2024). 아동학대 예방의 실천과 대응절차 이해. 아동학대 보수교육.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9-10.
- 이현혜(2024). 영유아 성행동 대응과 성폭력 예방. 남양주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현혜(2015). 좋아서 꺼안았는데, 왜?. 천개의 바람
- 이현혜(2020). 왜, 먼저 물어보지 않니? 천개의 바람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장영인, 정민자(2016).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 논의.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25-55.
- 조명제, 김계희(1993) 주요 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CES-D10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32(3), 381-199.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훈육방법.
- 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3종).
- Dept. for Education of South Australian Government, CESA, & AISSA. (2019). Responding to problem sexual behavior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Published by the Dept. for Education of South Australian Government, Catholic Education South Australia, and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 of South Australia.

- Dept. for Education, Catholic Education South Australia,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 of South Australia. (2019). Responding to Problem Sexual Behaviour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Guidelines for staff in education and care settings.
- Karageorge, K. & Kendall, R. (2008). The Role of Professional Child Care Providers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hild Abuse and Neglect.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es.
- 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2017). Children with Sexual Behavior Problems: Research on best practices, current systems, and policy and practice recommendations to improve Minnesota's ability to provide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services.
-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2009).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Sexual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Information for Parents and Caregivers.
- 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2014). Excessive Stress Disrupts the Architecture of the Developing Brain.
- Rick Morris(2006). Protecting and Parenting Sexuality Abused Children – Toolss for Parents and Caregivers
-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09/98712320/1>)
- (사)한국성폭력상담소(2020).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실종예방수첩.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 안전드림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
- E나라지표 홈페이지 (www.index.go.kr).
-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수칙 매뉴얼(서울특별시).
-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 행동 매뉴얼(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경기일보(<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9580061>)
- YTN(https://www.ytn.co.kr/_ln/0103_202408221502422201)
- KBS(<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89255&ref=A>)

집필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이현혜 법무법인 해송 인권연구소 소장
송정훈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주 소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 주연빌딩
전 화 (02) 1661- 5666
팩 스 (02) 6901- 0256
디자인·인쇄 디자인 나무 032-327-6109

본책자의 판권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본 출판물의 내용 일부 혹은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